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961-10

www.moe.go.kr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22. 12.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 일러두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인용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유아·특수교육 1

유아교육

01. 코로나 양성 확진 후, 격리해제서 수령 시 유치원 등원 문의 ····· 3
02.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사처리 ····· 4
03. 공립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 5
04.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CCTV 설치 관련 ····· 6
05. 국·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문의 ····· 7
06.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 8

전화민원

07.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연령 ····· 9
08. 유치원운영지원비 반환 관련 ····· 10
09. 유아학비지원의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간 문의 ····· 10
10. 유치원 전학 관련 ····· 11
11. 처음학교로 신청 문의 ····· 12
12.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13
13. 유아학비 지원 관련 ····· 13

특수교육

1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비 지원 관련 ····· 14
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해석 요청 ····· 15
16.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확대 ····· 16
17. 농인 대학원생 통역 지원 관련 ····· 18
18. 장애학생에 대한 고교학점제 적용 여부 ····· 19

전화민원

19. 장애이해교육 근거 ····· 20
20. 건강장애증명서 발급 관련 ····· 21
21. 대학생(대학원생) 법정 이수 교육 ····· 22

Ⅱ 초·중등교육 23

교육과정

01. 학생평가 방식 개선 요청 ····· 25
02.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입력 주체 ····· 26
03.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취소사유 ····· 27
04.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내 자기소개서 제출 ····· 28
05. 고교학점제 관련 교양교과군 수업 전담 문의 ····· 29
06. 안전 · 생명 관련 과목 개설 ····· 30
07. 초 · 중 · 고 교육과정 문의 ····· 31
08. 코딩 및 영어교육 강화 요청 ····· 32
09. 초등 정규교육 과정에 경제 과목 추가 요청 ····· 33
10. 지방공무원 사회복지 직렬 신설 요청 ····· 34
11. 공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 34
12. 학교기숙사 방역 관리 ····· 35
13. 졸업 후 고등학교 재입학 가능 여부 ····· 36
14. 코로나19 관련 전면등교 우려 ····· 37
15. 초등교과서 구입 방법 ····· 38
16. 2022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적용 일정 ····· 38
17. 가벼운 교과서 제작 건의 ····· 39

Contents

18. 교과서 내용 수록 요청 ····· 40
19. 국사교과서 저작권 및 이용범위 ····· 41
20. 일제 강점기 독립군 활동 관련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 ····· 42

전화민원

21.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평가 ····· 43
22. 학교급별·학년별 국어 기본 어휘 목록 ····· 44
23. 국어과 필수 어휘 관련 ····· 45
24.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요원 배치 근거 ····· 46
25. 22년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과학 디지털교과서 적용 여부 ····· 47
26. 개명에 따른 학생부 정정 사실 확인 여부 ····· 47
27.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 48
28. 영재학교의 생활기록부 ····· 48
29.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재 ····· 49
3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단어 ····· 49
31. 여학생의 생리결석 관련 ····· 50
32. 학교생활기록부 영문 발급 ····· 50
33.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 51
34. 초등 생존수영 강사 자격 기준 ····· 51

교육복지

35.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학력인정 문의 ····· 52
36.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강화 ····· 53
37. 재외국민의 고등학교 편입 관련 서류 ····· 54
38.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 자격 ····· 55
39. 다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 56

40.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급식 제공 ····· 57
41.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초등돌봄교실 선정 관련 ····· 58

전화민원

42.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급여 신청 ····· 59
43. 전학(전입, 전출) 시 교육급여 신청 ····· 60
44. 교육급여 직권신청 가능 여부 ····· 60
45.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 관련 ····· 61
46.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급 ····· 61
47. 교육급여 대상자 관련 ····· 62
48. 교육급여 재산 조회 ····· 62
49. 꿈이음 사업 문의 ····· 63

학생지원

50.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유효기간 문의 ····· 64
51.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주기 ····· 65
52. 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 66
53. 학교의 환경위생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67
54. 학생 건강검진 방식 개선 요청 ····· 67
55. 마약 예방교육 실시 요청 ····· 68
56. 학교 내 PCR/신속항원검사 도입 반대 ····· 69
57.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 요청 ····· 70
58.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운영 중단 요청 ····· 71
59. 유아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청 ····· 72
60. 학교방역인력 지원 중단 요청 ····· 73
61. 교내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 ····· 74

Contents

62. 공공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75
6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의무화 실시 ····· 76
64. 특목고 및 기숙사형 고등학교 생활 개선 건의 ····· 77
65. 학교 내 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요청 ····· 78
66. 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 79

전화민원

67. 천연 잔디 운동장 유지·관리 ····· 80
68. 대학의 실내 공기질 측정 ····· 81
69. 전학생 학생건강검진 관련 ····· 82
70. 학생건강검진기관 신청 절차 ····· 83
71. 초·중·고 학생의 체력평가 ····· 84
72. 학교도서관 폐기 대상 자료 활용 ····· 84
73. 학교배상책임공제 관련 ····· 85
74. 학생들 수업모습 영상 촬영 시 개인정보 동의서 ····· 86
75.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모듈러 수주 ····· 86

학교제도

76. 교복 디자인 관련 ····· 87
77. 의무교육 근거 법령 질의 ····· 88
78. 「초·중등교육법」해석에 대한 질의 ····· 89
79. 초등학교 돌봄특기적성 강사 고용보험 적용 여부 ····· 90
80.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폐지 ····· 91
81.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절차 ····· 92
8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선정 ····· 92
83. 폭염 재난 대처에 대한 대책 마련 ····· 93

84.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시 주체 ····· 94
85. 등하교 시 교사의 통학지도 ····· 95
86.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요청 ····· 96

전화민원

87. 한복교복 선정학교 명단 확인방법 ····· 97
88.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 98
89.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매뉴얼 ····· 99

교원 인사·복지

90.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100
91. 교원의 겸직허가 ····· 101
92.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 103
93. 교육공무원 자율연수 휴직 ····· 104
94. 방학 중 교원 복무 ····· 105
95. 교원 임용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 인정 ····· 106
96. 교원 간 갈등 사안처리 ····· 107
97. 교원 업무 경감 관련 ····· 108
98. 교원의 가족돌봄휴가 ····· 109
99. 장애차별금지 관련 교육공무직원 채용 문의 ····· 110
100.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 개선 ····· 111

전화민원

101. 교장 임용 제청 ····· 112
102. 명예퇴직 교원 급여 ····· 113

Contents

103.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후 소속 직원의 신분 ····· 114
104. 사립 초·중등 교원의 초과근무 ····· 115
105. 재량휴업일 교원의 당직 근무 ····· 115
106. 교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문의 ····· 116

교원 자격

107.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어린이집 교생실습 가능 여부 ····· 117
108.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범위 ····· 119
109. 교직과목의 원격수업 운영 ····· 121
110. 군복무자 임용시험 및 유예 ····· 122
111. 사범대학 성인지 교육 이수 ····· 123
112. 교사결격 사유(마약 중독 여부 검사) ····· 124

전화민원

113. 교원의 마약류 판별 검사결과서 제출 문의 ····· 125
114. 성인지교육 이수 관련 ····· 126
115.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 127
116.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원임용시험 문의 ····· 128
117. 교원임용시험 시 졸업예정자 기준 ····· 129

Ⅲ 고등교육 131

대학 학사·제도

01. 다자녀장학금 성적기준 ····· 133

0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대상 ····· 134
03.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 135
0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136
05.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 136

전화민원

06. 교환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 137
07. 대학생의 출산 시 공결 관련 ····· 138
08. 대학원 신입학생 입학금 반환 가능 여부 ····· 139
09. 이혼 가정의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140
10. 방송통신대학의 지방대학 포함 여부 ····· 140
11. 대학원 등록금 현황 ····· 141
12.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신분유지 ····· 141

대학 인사·복무

13. 교원 퇴직 시 정부포상 제한 근거 ····· 142
14. 대학 전임교원 겸직(유튜브 활동) 문의 ····· 143
15. 겸임교원 등 신규채용 자격 연령 ····· 144
16. 사립대학 교원 복무 ····· 145
1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관련 질의 ····· 146
18. 국·공립대 조교 신분 ····· 147
19. 대학 교원 겸직 관련 ····· 148
20. 초빙교원 퇴직금 관련 법령 해석 문의 ····· 149
21. 국립대 조교 복무 문의 ····· 150
22.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 ····· 151
23.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대학 교원 휴직 ····· 152

Contents

24.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 ····· 153
25. 당연퇴직 사유 발생 교원에 대한 퇴직 관련 ····· 154
26.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 ····· 155
27. 강사의 퇴직금 지급요건과 산정 기준 ····· 156
28.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 157
29. 대학원생 처우개선 요청 ····· 157

전화민원

30. 대학 채용 단기 계약직 근로자 급여 ····· 158
31. 사립대학 교수의 보직 관련 ····· 159
32. 사립대학 이사장 겸직 가능 여부 ····· 159
33. 사립대학 행정조교의 교육경력 인정 문의 ····· 160
34. 전임교수의 타 대학 강사 겸직 가능 여부 ····· 160
35. 사립대학교 교원 징계 ····· 161
36. 교수의 지자체장 겸직 가능 여부 ····· 162

대입제도

37. 재외국민 특례전형 ····· 163
38. 지역저소득층 의무 선발 운영 사항 ····· 164
39. 대학 지원 시 현역 군인에 대한 불이익 개선 요구 ····· 164

전화민원

40. 대학 편입학 시 제출 서류 ····· 165
41.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 166
42. 수시전형 경쟁률 공표 ····· 166

43.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3년 특례) ····· 167
44.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 168
45.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169
46. 의대 등 지역인재전형에서의 가족요건 ····· 170

대학운영

47. 대학원대학 개설 가능 여부 ····· 171
48. 사립대학 기본자산 매각 방식 ····· 172
49.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 173
50. 대학발전기금 모집 관련 ····· 174
51. 법정기부금으로 환자치료비 지원 가능 여부 ····· 176
52. 구내식당 임대 관련 ····· 177
53.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 178
54. 대학 정원감축 요청 ····· 179
55. 대학 재정지원 관련 ····· 180
56. 국립대학회계 운영수당(210-06목) 지급 가능 범위 ····· 181
57. 국립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증액 ····· 182
58. 국립대학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범위 ····· 182
59.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관련 ····· 183
60. 국립대학회계 강사수당 지급 기준 ····· 183
61. 산학협력단 운영차익 활용 ····· 184

전화민원

62.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서식 ····· 185
63. 대학생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 ····· 186
64. 대학생 현장실습 정부지원금 기준 ····· 187

Contents

65.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대학 현황 ····· 188
66. 폐교된 동부산대학교 활용 ····· 189
67. 대학 행사 시 주류 판매 ····· 190
68. 대학 내에서의 음주 금지 여부 ····· 191
69. 대학교 축제 시 식품 조리·판매 ····· 192
70. 대학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193

Ⅳ 평생교육·국제교육 195

평생교육

01. 평생교육기관의 방역패스 기준 ····· 197
0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양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 198
03. 평생교육원 내 대체의학 관련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 199
0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관등록번호 조회 가능 여부 ····· 200
05. 평생학습시설 수강료 환불 ····· 200
06. 평생교육원 숙박 ····· 201
07.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 시 학력란 기재 관련 ····· 201
08.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대면수업 운영 ····· 202
09. 학점은행제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행 ····· 203
10.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 취득 ····· 203

전화민원

11. 방송통신대 편입학 ····· 204
12. 사이버대학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근거 법령 ····· 205

13.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 206
14.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206
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 ····· 207
16. 학원강사의 성범죄경력확인서 발급 ····· 207
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대상 ····· 208
18. 학원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 관련 ····· 209
19. 스터디카페 지도·감독 요청 ····· 210
20.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 ····· 211

국제교육

21. 해외 대학교 학위 인증 ····· 212
22. 재외한국학교장의 임기 ····· 213
23. 한국학교 설립 근거 ····· 214

전화민원

24. 대학 부설 한국 어학당 현황 ····· 215
25.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학적증명서 발급 ····· 216
26. 인가받은 외국교육기관 현황 ····· 216

V 기타 217

기타

01. 국가공무원의 질병휴직 ····· 219
02. 교육부 관할 각 기관의 채용공고 확인방법 ····· 220

Contents

03.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 재직기간 ····· 221
0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우선순위 ····· 222

전화민원

05. 교육지원청 설치 관련 법령 ····· 223
06.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224
07. 스승의 날 카네이션 ····· 224
08. 국내 대학의 법인명, 개교일 확인 방법 ····· 225

Ⅵ 소속기관 227

국립국제교육원

01.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 229
0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서버 관련 ····· 230
03.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비 보조 ····· 2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04. 교원소청심사 청구서 및 기타 서류 작성·제출 방법 ····· 232
05.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방법 ····· 233
06. 교원소청심사 결정서 재교부 문의 ····· 234

국사편찬위원회

07. 삼국사기 판본 관련 ····· 235

08. 한반도 벼농사의 시작 시점 ····· 236
09.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사초의 문자 및 어순 ····· 237
10. 조선시대 수군통제사 품계 ····· 238
11. 북한 공군 이웅평의 귀순 이유 ····· 239
12. 우리역사넷 역대국사교과서 개선 요청 ····· 240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바일 사이트 이용 방법 개선 ····· 241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시스템 개선 ····· 242

I

유아·특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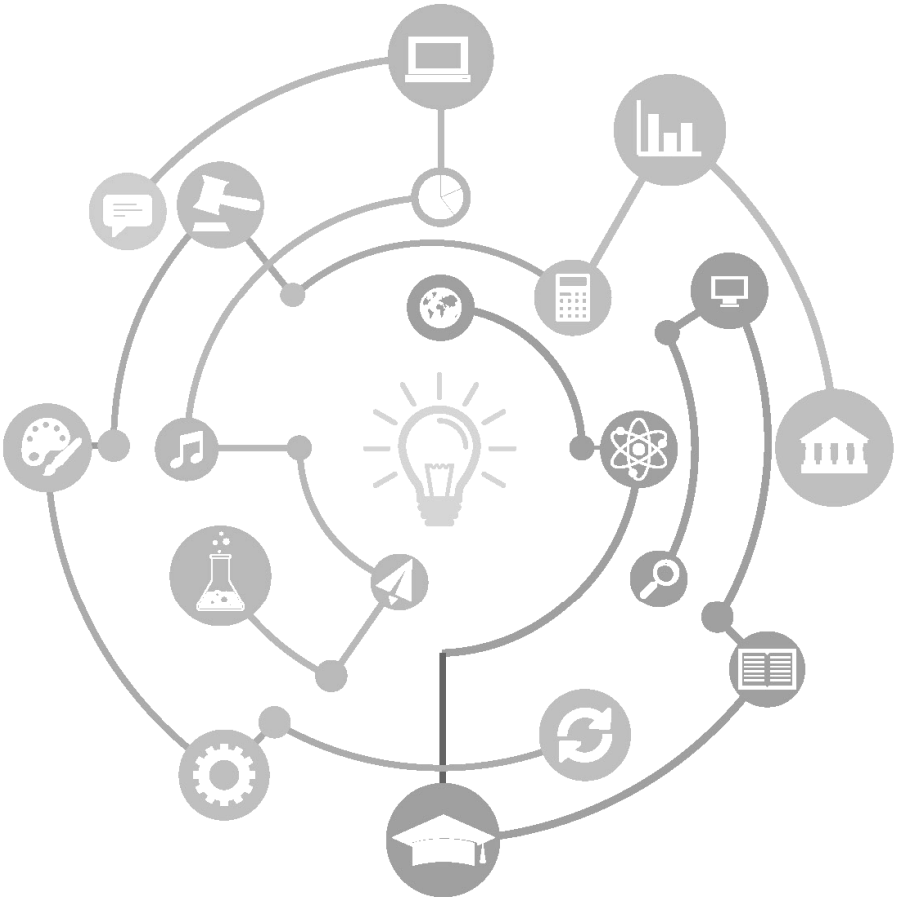

유아교육

01 코로나 양성 확진 후, 격리해제서 수령 시 유치원 등원 문의

질의요지

코로나 양성 확진 후 격리해제서를 수령하였지만 코로나 검사 결과는 최소 3개월 이상 양성으로 나오는데, 유치원 등원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1-05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2)판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유아)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각급 학교(유치원)에서는 등교 전(가정), 등교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원) 중지 등으로 학교(유치원) 내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02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사처리

질의요지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관리책임자와 작성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또, 유치원 졸업생이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고 하는 경우 퇴학처리를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2-01-0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0-315)에 근거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p.17)에 안내된 바와 같이 작성 및 관리의 책임자는 원장이고 작성자는 당해 학년도 유아의 담임교사입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에 따라 2학기는 2월말일까지이므로 졸업 후 이사로 인하여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졸업으로 학적을 처리하고 학비시스템은 퇴원처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졸업이 아닌 수료, 이사 후 당해 학년도 학기 중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다니게 될 경우 처리가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께 유아학비 지원시점에 대한 안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 공립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질의요지

공립유치원은 교사 대비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주세요.

회신내용 2022-02-15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우리부는 그간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공립유치원 교원 수를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왔으며, 교사 대 유아 수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교사 대 유아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도농산어촌간 지역별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인수학급부터 밀집도 높은 학급 등 다소 큰 격차 또한 있는 상황으로 이 역시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의 유형,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축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학급 신증설 및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한정된 지방교육재정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CCTV 설치 관련

질의요지

유치원은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몇몇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2-21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등에 따라 공개된 장소의 경우 유치원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설치 가능합니다. '21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건물 내·외의 CCTV 설치율은 9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교실 등 비공개 장소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설치 가능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 따라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21.6.24.)된 상태이고,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아교육에 있어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귀하의 말씀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매년 정기적 지도·점검, 유아 안전 관련 자료 개발·보급, 안전한 유치원 환경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유치원 평가항목에 안전 관련 요소 강화, 교직원 연수 추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5 국·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문의

질의요지

선진국에 비해 유치원 교사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증원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8-08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우리부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유아수 감소에도 '17년 이후 지속 교원을 증원하여 총 4,732명을 증원해(동기간 30.6% 증가) 왔습니다. 그 결과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매년 낮아져 약 13.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 충족률, 유아 수급감 등 도농산어촌 간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립의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교원)의 정원은 시도교육청의 소요정원 수요조사 및 우리부와 국가공무원 정원을 총괄하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급별(유치원, 초등, 중등 등) 총 정원을 통보합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은 배정된 교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존 교원의 퇴직 등에 따른 결원 규모, 취원 유아의 감소에 따른 유치원 통폐합 규모, 유치원 신증설 계획, 임용 대기인원 등 교원 수급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매년 신규임용선발 규모를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06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질의요지

질병결석확인서 제출 시, 생활기록부에 출석이 30일까지 인정되는지, 유아학비 지원 일수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9-2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우리부는 매년 초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계획 p.5에 제시되어 있는 【공통기준】에 따르면,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써,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상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교육일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교육일수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교육부 누리집(moe.go.kr) 〉〉 유아교육 〉〉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아울러, 우리부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0-315호)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교육부 누리집(moe.go.kr) 〉〉 유아교육 〉〉 2020 유치원생활기록 기재요령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미세먼지(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임.-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승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때 유치원장은 유아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그 기간 및 횟수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전화민원

07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연령

질의요지

교육부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p.74 '2.통학버스 운행 계약 특수조건 예시'의 제9조(운전자)에서 운전자의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현장적합성에 맞춰 65세 이상인 운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의 통학버스 운행 계약 특수조건의 운전자의 연령 만 65세 이하는 예시사항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계약 시 운전자의 나이제한은 시·도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인 제한 요건은 아닙니다.

08 유치원운영지원비 반환 관련

질의요지

유치원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다니지 않기로 하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유치원을 그만둘 경우 유치원운영지원비도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지난 2020년 5월 〈유치원 원비 징수·반환 일반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유치원은 유치원의 수업료를 제외한 수익자 경비는 수혜자에 한하여 징수하고, 집행 잔액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치원은 이미 징수한 수익자 경비가 징수한 목적에 따라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치원을 지도·감독하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유아학비지원의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간 문의

질의요지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아학비의 경우 3년간만 지원된다고 하는데 방과후 과정비도 3년만 지원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과후 과정비 역시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0 유치원 전학 관련

질의요지

이사 계획이 있어 아이 유치원을 알아보던 중에 10월부터는 유치원 전학생을 받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9월에 유치원에 문의를 했다가 이사하는 날이 10월 24일로 다가와서 전학을 진행하려고 하니, 정원이 있음에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처음학교로 사용과 관련하여 유치원 입학 운영에 있어 변칙적인 참여 및 불공정하게 모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육청에 안내한 바는 있습니다.
- 다만, 유치원생의 전학 등 입학은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장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학 등 입학에 대한 사항은 처음학교로 운영의 변칙적인 참여나 불공정모집 등이 아닌지를 고려하여 유치원의 규칙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11 처음학교로 신청 문의

질의요지

아이가 6세로 서울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7세 재원신청을 하라고 하여 우선모집에서 재원신청을 하였는데, 23년 1~2월 경에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서 지방에 있는 유치원으로는 입학지원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3월에 지방에 있는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유치원으로 입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원신청을 한 상태라도 처음학교로에서 이사 갈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입학 희망 유치원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처음학교로 신청은 지역제한이 없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방의 유치원으로 입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질의요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방학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나가 한 달 넘게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개학 후 담임선생님은 이달에 수업료 전액을 다 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해외체류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며 해외체류기간 날짜 기산 시 출국일을 포함합니다.

13 유아학비 지원 관련

질의요지

주민센터입니다.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을 아예 하나도 지원받고 있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자격부여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날 1일부터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가 그 동안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유아학비를 처음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최초 자격부여일로 봅니다.

특수교육

1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비 지원 관련

질의요지

자율형 사립고는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한, 사립의 고등학교도 의무교육비 지원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2022-01-28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임을 고려할 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특수교육법」 제3조의 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청은 의무교육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해석 요청

질의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 설치 기준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포함되는지요?

회신내용 2022-07-22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규정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며, 관련된 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 규정의 '학생'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확대

질의요지

발달장애 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이 낮으므로, 장애인들의 고등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진학 및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 지원 인력과 예산의 확충, 제도 정비 등에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2-09-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장애학생평생교육팀)

- 우선, 교육부 '장애학생과 장애인의 진로·고등·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부에서는 발달장애 학생을 비롯하여 장애학생의 비진학·미취업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령기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 장애인 진로멘토단, 특수학교 진로체험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특성 및 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특기 및 적성, 직업적 흥미, 진로성향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직업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취업에 필요한 실무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등 장애학생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을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22.2)」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달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개선, 대학진학 상담 지원, 대입 정보제공 개선, 수능 편의지원 강화, 대학생활체험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22년 15억 → '23년 53억)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 관련 법령 정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 농인 대학원생 통역 지원 관련

질의요지

농인 대학원생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09-2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장애학생평생교육팀)

-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3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학기 대학의 신청을 받아 사업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대학의 일부 대응투자 포함).
- 대학이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장애대학(원)생은 대학을 통해 수요에 따라 일반지원인력(이동, 대필 등 생활지원), 전문 지원인력(수어통역사, 속기사 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장애학생 지원 부서에서 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대학 차원의 사업참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므로, 재학중인 대학 내 관련 부서(장애학생 지원센터 등)를 통해 관련 절차(신청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장애학생에 대한 고교학점제 적용 여부

질의요지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유급 제도의 적용 여부, 장애학생에게의 고교학점제 적용 여부, 고교학점제 적용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과목 이수 기준 마련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5-17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1.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제도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 학교가 획일적으로 정한 과목이 아닌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학생 스스로 진로와 학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유급 제도의 적용 여부

   -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목별로 출석율과 성취기준을 기본으로 이수여부가 결정됩니다만, 성취수준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학습결손을 보완하면서, 학습동기 부여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장애학생에게의 고교학점제 적용 여부

   - 고교학점제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 제3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점제가 운영되는 학교의 학생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고교학점제 적용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과목 이수 기준 마련

   -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2.)'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기준(과목출석률 2/3, 학업성취률 40% 이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19 장애이해교육 근거

질의요지

장애이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이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육부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부 지침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매년 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건강장애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요지

OO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대입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건강장애 학생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장애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해당 학생은 건강장애증명서라는 건 없다면서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와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

- 건강장애는 교육부 소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장애 유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건강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장)이 결정하며,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합니다.
- 따라서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방법에 대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대학생(대학원생) 법정 이수 교육

질의요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중에 학교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이수교육이라며 반드시 수강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장애학생평생교육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폭력예방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II

초·중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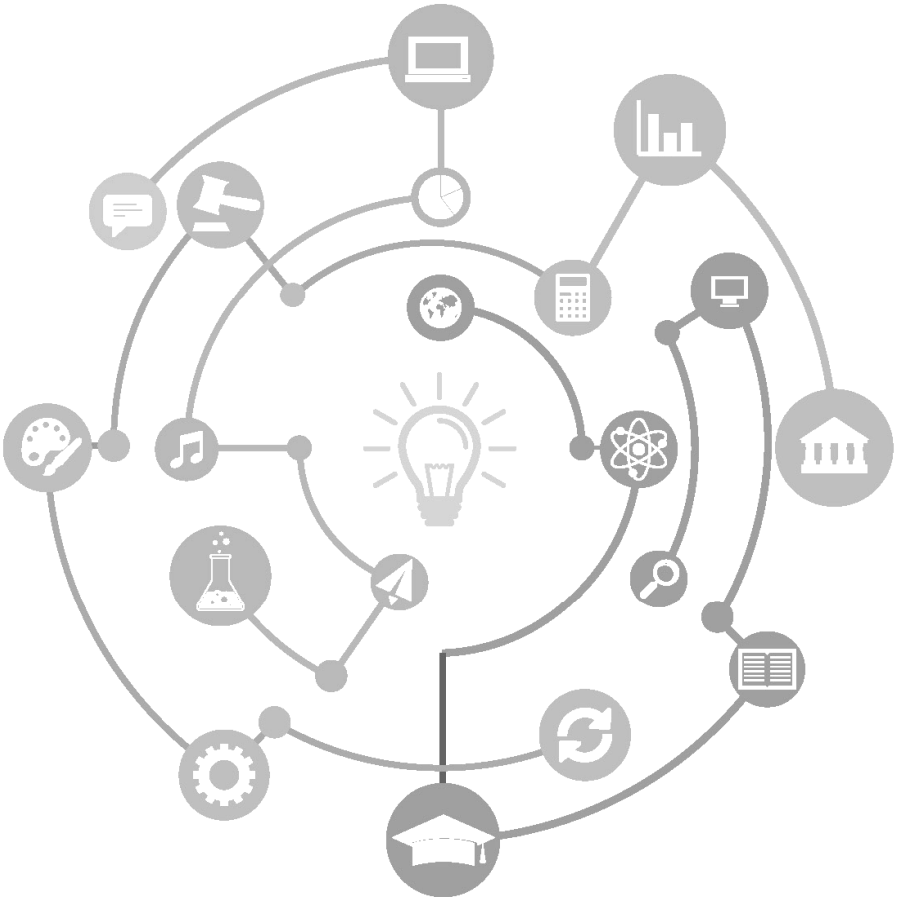

교육과정

01 학생평가 방식 개선 요청

질의요지

단순 서열 중심의 구시대적인 중·고등학교 상대평가방식을 개선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6-02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우리 부는 학생평가 방식에 있어서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여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2012학년도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하여 운영(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은 석차등급 병기)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교과별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교수학습과 평가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2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입력 주체

질의요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의 경우 담임교사가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교사와 입력주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2-04-25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학생부 항목별 입력주체는 학생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학교 현장 방문조사, 교원·학부모·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 그 결과, 진로활동의 특기사항 입력주체는 담임교사로 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⑥ 제2항 및 제3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학생의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학생의 진로활동 관련 특성을 입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담임교사가 이를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진로활동 특기사항 기재 시 참고사항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결과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한 사항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 상기 이유로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영역은 배정된 시간의 담당 교사를 입력 주체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03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취소사유

질의요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5-03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체험처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는 진로체험 인증기관들의 질 관리를 위하여 '기관 운영상의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 관련 인증기관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경우,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 판결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4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내 자기소개서 제출

질의요지

영재학교 입학전형 또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사용되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05-02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영재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영재학교는 영재학교의 장이 영재학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 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소정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자기소개서'를 포함할지 여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영재학교의 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신장시킬 것을 목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교원의 추천서, 면접,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등(자기소개서도 포함 가능)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자기소개서'를 포함할지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판단할 사안이며, 획일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05 고교학점제 관련 교양교과군 수업 전담 문의

질의요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그 취지에 맞춰 선택과목 수를 늘리고 있는데, 심리학 전공이 아닌 영어, 체육 등 타교과 교사가 심리학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01-19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사의 담당 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표시과목을 의미합니다.

  ※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표시과목에 '심리학'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심리학'과목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표시과목 심리학을 소지한 교원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사의 임용권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교육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게,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게 있어,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담당 과목이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6 안전 · 생명 관련 과목 개설

질의요지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안전생명 관련 과목을 개설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11-16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따라 안전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전한 생활과 연관 교과인 초등 통합교과,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체육, 미술, 실과(기술 · 가정), 보건 등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 또한, 범교과 학습주제 중 '안전 · 건강교육'에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 등 7대 안전교육(생활, 교통,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 직업, 응급처치)을 편성하여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학생이 안전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재 개정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험 · 실습 중심의 실효적인 안전교육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07 초·중·고 교육과정 문의

질의요지

초·중·고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시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10-14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 또한,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이후 새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학교급별 해설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에,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에, 2026년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2027년 중·고등학교 3학년에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08 코딩 및 영어교육 강화

질의요지

사교육비 절감 및 아이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영어와 코딩교육에 대한 공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2022-06-27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코딩 교육은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SW교육이 필수화되어, 초등단계부터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학생 성장에 따라 블록코딩에 기반한 코딩교육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25년 적용)에서는 모든 교과교육을 통한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을 강화하며, SW을 기반으로 AI 등이 접목되어 일상생활 등 삶과 연계된 문제 해결 상황에서의 코딩교육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영어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은 모국어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시기로 한글 배움을 통해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저학년 단계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및 영어캠프, AI 활용 영어말하기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와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09 초등 정규교육 과정에 경제 과목 추가 요청

질의요지

아이들에게도 화폐 및 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등교육과정에 경제 금융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3-29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경제·금융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발달단계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에서 희소성, 생산, 소비, 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 실과에서 용돈 관리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범교과 학습주제에 경제·금융교육을 포함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통합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학교 사회, 기술·가정, 고등학교 통합사회 및 경제, 실용경제 등의 과목에서는 희소성, 생산, 소비, 합리적 선택, 시장과 경제활동, 자산관리 등을 포함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금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교과에서 실생활과 연계한 생활 중심 경제·금융교육 내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0 지방공무원 사회복지 직렬 신설 요청

질의요지

가정폭력이 점점 증가하여 현장에서는 관련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가정폭력 전담 사회복지사 직렬 신설을 제안합니다.

회신내용 2022-03-24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시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행정직군 사회복지직렬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에 따라 해당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 및 배치 여부는 시·도별 인사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어, 우리 부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공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질의요지

출생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2-06-16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교육의 신뢰를 높여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특히 △소규모 교과보충 지도 및 대학생 튜터링 확대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 △취약계층 지원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맞춤형 학습 체계 운영 등을 통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12 학교기숙사 방역 관리

질의요지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 기숙사의 수용 인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2022-08-11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2학기 학교기숙사 방역 관리 지침' 과 관련하여, 우리 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정안(제8판)」을 안내(학생건강정책과-6187, 2022.8.10.)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발열 검사, 환기, 일시적 관찰실, 방력인력, 소독)하면서, 그 간의 축적된 방역 관리역량,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및 학교 자율성 강화
- '2학기 학교기숙사 입사 인원'은 지역별 학교별 시설 여건이 다르므로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학교 자체 방역관리 계획' 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안정적인 학교 방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졸업 후 고등학교 재입학 가능 여부

질의요지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시 고등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0-02-13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고등학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 사무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4 코로나19 관련 전면등교 우려

질의요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면등교해도 되나요?

회신내용 2021-12-6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방향에 따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초중등 및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방안(10.29.)'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강조뿐 아니라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중앙단위 합동역학 조사반'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방역취약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11.1.~11.21.)부터 실시해 온 학교 안팎 집중 현장 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하여 전면 등교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면 등교 이후에도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외 취약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 초등교과서 구입 방법

질의요지

실수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실하였습니다. 교과서 구입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2022-09-19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교과서 구입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홈페이지(www.ktbook.com)에서 〈온라인쇼핑몰-주문서비스〉로 구매가 가능하며, 재고량 부족 등 구매가 어려울 경우 해당 출판사로 구매 문의가 가능합니다. 교과서 구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또는 해당 출판사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2022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적용 일정

질의요지

2025학년도부터 중 ·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06-20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021.11.24.)에 따르면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는 '22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새 교육과정은 202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7년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일정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7 가벼운 교과서 제작 건의

질의요지

초등학교 교과서가 아이들의 체구와 체력에 비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벼운 교과서 제작을 건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3-28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현재, 교과서 외형체제 개선정책에 따라 편찬기관이나 출판사에서는 교과별 특성,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 미적감각 및 오감발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교과서의 외형체제(무게 포함)와 관련하여,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교과서는 내부 정책연구, 학교현장(교사, 학생 등), 전문가 및 민원인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8 교과서 내용 수록 요청

질의요지

조선전기의 다양한 과학업적과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3-24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현행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집필하고, 검정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사를 받는 '검정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서에 수록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출판사의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교과서 서술 보완 등에 대한 의견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www.textbook114.com)에 민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센터에서 발행사에 이관하여 교과서 집필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9 국사교과서 저작권 및 이용범위

질의요지

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상업적 이용범위와 사용에 대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2022-06-30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현행 역사 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개발하고, 검정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사를 받는 '검정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 교과서의 본문 서술은 집필진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하고 해석한 산물로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등의 조항에 따라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과서 본문 외 사진, 그림, 도표 등 인용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배포, 전송, 판매하는 경우로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제18조(공중송신권) 등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일제 강점기 독립군 활동 관련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

질의요지

일제 강점기 독립군 활동과 관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였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10-18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역사 교과서는 교육과정, 집필기준, 편찬상의 유의점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에 의해 개발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학계에서 충분히 합의된 이론이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한국사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학계의 검증 및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일반적 학설로 확립될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검정교과서 체제로 개발되는 중학교「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의 특정 출판사 관련 내용 서술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www.textbook114.com)를 통해 집필진에게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으며, 집필진의 수용 여부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수정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21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평가

질의요지

자녀가 올해 중3으로, 2023학년도인 내년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고교학점제에 따라 개편하는 평가체제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현재의 평가체제를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22 학교급별·학년별 국어 기본 어휘 목록

질의요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안을 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서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안을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 리스트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모국어 교육을 위해 마련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과정과 달리 학교급별·학년별 기본 어휘 목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경우 필요한 낱말, 어휘 등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23 국어과 필수 어휘 관련

질의요지

'영어' 교과의 학년별 필수 어휘처럼 '국어' 교과의 초등학생 학년별 필수 어휘를 제시하여 안내하는 자료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다고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영어과 교육과정상의 기본 어휘 지침에는 각 학년 또는 단계별로 이수하여야 할 새로운 어휘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특정 단어를 학년 또는 단계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문의 주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학교급별로 이수해야 하는 어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우리말의 기본 어휘 목록을 참고하고자 하시면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실에 올라 있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3단계, 총 5965개 단어 포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4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요원 배치 근거

질의요지

수도권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에 안전요원을 동행해야 한다고 하던데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부에서는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재검토 하고, 학생·학부모 요구와 교육적 효과성을 고려한 수학여행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14.6월, 교육부)」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시행방안에는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동반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16.12월, 교육부)」에도 안전요원을 배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유·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 분권 강화('17.12월~)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 22년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과학 디지털교과서 적용 여부

질의요지

22년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3학년 때는 사회와 과학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했었는데, 초등 4학년의 사회, 과학 교과가 검정도서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검정도서로 전환되어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검정도서는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2022년 3월 1일부터 3,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 과학 교과가 디지털교과서로 적용됩니다.

26 개명에 따른 학생부 정정 사실 확인 여부

질의요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개명을 하여 학생부를 정정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했을 때 '개명에 의한 정정'이라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표시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합니다. 정정대장을 통하여 개명 건이 반영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했을 경우 정정된 이름만 표기되어 나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개명에 의한 정정'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27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질의요지

2020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같은 해에 취득한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취득할 당시에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21년도에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이 되었는데, 이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2020년에 취득한 민간자격이 2021년에 국가 공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공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볼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8 영재학교의 생활기록부

질의요지

영재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입학전형 시에 다른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처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

- 영재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와 양식이 다릅니다.
  * 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 또한, 대입전형 시 일반고등학교처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영재학교의 경우 대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제공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9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재

질의요지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SSN(정기간행물)이면서 단행본으로 ISSN에 동시에 등재된 도서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두 곳 동시에 등재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3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단어

질의요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전자나 ○○중공업과 같은 특정기업명이 들어가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구체적인 특정 상호명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1 여학생의 생리결석 관련

질의요지

여학생의 생리결석이 월 1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월 1회를 한 달 간격으로 두어야 하는 건지, 매월 1회 사용하되 전 달과의 간격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월 1회라고 선언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여학생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생리주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생리통이 다른 달에 비해 극심할 수 있습니다. 생리결석의 허용 배경이나 취지는 여학생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달 간의 간격을 두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2 학교생활기록부 영문 발급

질의요지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국의 국제학교에서 영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교육제증명서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영문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 어렵다고 할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문으로 발급을 한 후 영문으로 번역 후 공증 받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질의요지

2022년 올해부터 중학생인 학생선수가 대회참가를 하게 될 경우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12일로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선수가 이 12일을 넘어 결석처리를 하면서 대회에 참가를 하려고 할 경우에 학교장이 허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대회·훈련에 참가할 시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회참가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학생선수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12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고, 대회참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34 초등 생존수영 강사 자격 기준

질의요지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강사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초등 생존수영교육 강사는 법률상 자격소지자*와 민간 생존수영지도자격 소지자**를 우선 위촉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수영선수이력 등 실기능력을 갖춘 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수상구조법(수상구조사),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 수상레저안전법(인명구조요원)
  ** 생존수영 민간자격 주무부처인 해경청에 등록한 자격

- 다만, 2022년부터 초등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교육청별로 제시하고 있는 초등 생존수영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35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학력인정 문의

질의요지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학력인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10-13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또한,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검정고시를 응시한 시도교육청에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강화

질의요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와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2-02-1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15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문화교육'을 제시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교과·비교과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에 다양성 이해 및 올바른 관계 형성 등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반영하고,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보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부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 재외국민의 고등학교 편입 관련 서류

질의요지

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당 학기가 종료되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하려고 합니다. 한국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1-12-02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에 의하면 귀국학생 등이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 공증필요)
  (2) 성적증명서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6) 예방접종증명서
  (7) 기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정책/초중고교육)의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리스트에 있는 학교는 귀국 후 한국학교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목록에서 민원인이 재학 중인 현지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외교부 현지공관 혹은 한국교육원측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 자격

질의요지

중학교 배정이 완료된 초등학교 졸업자가 학업 능력이 뛰어나 중졸 검정고시 응시를 원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1-11-29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5조(응시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영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초등학교 졸업자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졸업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도 실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9 다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질의요지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보통 직장인의 월급으로 예술 사립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의 등록금과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1-12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구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보편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재정 상황,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건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 시도교육청과 주민센터에 다자녀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급식 제공

질의요지

방학기간에도 급식이 제공된다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학에도 초등돌봄교실에 급식 제공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08-10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중에도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보다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급간식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가 지역, 단위 학교의 여건, 돌봄 인프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추진하는 업무로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개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방학중 돌봄교실은 단위 학교에서 돌봄교실 연간 계획 수립 시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계획(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기간 및 시간, 대상 학생, 수익자부담의 범위,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수요조사를 미리 실시)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학중 돌봄교실의 간식 및 급식의 경우, '교육비 지원대상 이외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하되 학교별 운영 시간대에 따라 간식 및 급식 제공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초등돌봄교실 선정 관련

질의요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누구보다 초등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돌봄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2022-01-12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돌봄 수요 및 운영 여건이 각기 상이함에 따라 단위 학교별로 돌봄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참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결정하는 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는 돌봄의 질 제고와 함께, 최대한 돌봄수요를 반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대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전화민원

42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급여 신청

질의요지

교육급여 대상자로 올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가구의 소득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이미 2022학년도 교육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학기 초에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신청한 것을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요? 취소하게 될 경우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신청한 정보는 주민센터에서 연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취소를 하기 보다는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로 상황을 전달하는 등 주민센터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3 전학(전입, 전출) 시 교육급여 신청

질의요지

작년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 전학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급여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 대상자가 같은 관내 또는 타 시·도로 전학(전입, 전출)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전학 시 전출교와 전입교 간 전산 상으로 처리되는 것이니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교육급여 직권신청 가능 여부

질의요지

주민센터입니다. 2인이 같이 살고 있는데 1인이 생계, 의료, 주거 보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급여를 추가적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 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상대방이 동의하는 전제 하에서 직권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5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용 관련

질의요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받은 경우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콘텐츠에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서점은 문구류도 함께 팔고 있는데 이 포인트로 문구류도 살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으로는 서점에서 서적만 구매가능하며 문구류 등은 구매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6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급

질의요지

우리 아이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학기 중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학기 중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여도 교육활동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교육활동지원비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고교무상교육 대상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으며, 학기 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지급받습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대상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전액이란 학교장 고지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47 교육급여 대상자 관련

질의요지

교육급여를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였었는데, 대상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비지원처럼 학교장 추천에 의해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8 교육급여 재산 조회

질의요지

OO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아빠는 외국인이고 엄마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며 자녀 두 명은 한국 국적으로 이번에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 국적인 부모님들의 재산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국적인 부모님의 재산을 조회했을 때 재산초과로 나오고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급여 신청 시 외국인 부모의 재산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보장가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로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와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보장가구 구성 기준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49 꿈이음 사업 문의

질의요지

중학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교육과정을 수강하면 졸업으로 인정한다는 방송을 봤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꿈이음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으로 중학교의 경우 만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만 24세 이하 자입니다. 이 모든 자격을 갖추었으면 꿈이음 홈페이지(http://www.educerti.or.hr)에서 학습자 등록을 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지원

50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유효기간 문의

질의요지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유효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유예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적용 중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3-15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에서는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건소 업무과중 등을 고려하여 '20.9월부터 학교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한시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학교급식소에 완전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를 운반하는 자(배송요원)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추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유치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소 배송요원 이외 직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주기는 「식품위생법령」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주기

질의요지

학교 공기정화장치 필터를 반드시 연 2회 의무적으로 교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3-15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를 제작하여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 필터교체와 관련하여, 필터의 오염 및 손상여부 등 점검 후 필요시 필터를 교환하도록 하며, 관리 주기는 3~6개월로 하되, 공기정화장치의 종류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매뉴얼은 공기정화장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권고 지침이며, 필터의 상태와 관계없이 연 2회 이상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도교육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청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공기질 측정 장비 점검

질의요지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의 점검 횟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4-11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21.12.28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통하여 소급성 확보 검사와 정도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점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 다른 법률 적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추가적으로 측정장비의 점검은 점검 주체(교육청, 위탁업체, 학교 등)에서 실시토록 하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의 경우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측정장비의 경우 소급성 확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측정기기 점검에 따른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해당 교육청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학교의 환경위생 업무 담당 부서 문의

질의요지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위생 관리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10-05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교보건법」 제4조는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학교장의 의무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는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직원의 학교 내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업무분장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며, 학교 구성원과 학교 특성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4 학생 건강검진 방식 개선 요청

질의요지

학생 건강검진을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닌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2-12-19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현재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검진 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이용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5 마약 예방교육 실시 요청

질의요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10-11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학교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의 내용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등을 통해 예방교육 철저를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최근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마약종류별 마약의 폐해 및 마약성을 가진 살빼는 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마약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교육자료를 개발 및 배포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6 학교 내 PCR/신속항원검사 도입 반대

질의요지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내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회신내용 2022-02-10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 교육부도 학교 내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학교 내 접촉자로 분류되는 학생은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가정 내 검사를 기본으로 할 예정입니다.
- 학교 내 PCR 검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신속한 진단검사, 선별진료소로 각자 이동해야 하는 불편해소, 선별진료소 대기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아울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배부의 경우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자율방역(권고)을 위한 취지이며, 신속항원 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적 검사는 개개인의 감염여부 확인도 중요하나, 학교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교 중지 등의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실시 목적을 고려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7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 요청

질의요지

자녀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 혼란, 호흡곤란 등으로 힘들어 하는데, 착용 수칙을 완화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02-07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는 완벽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학교의 특성상,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기본원칙으로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방역수칙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는 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기본적인 방역조치입니다. 더욱이 학교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이 장시간 밀집해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은 유지가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58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운영 중단 요청

질의요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실시는 의무인가요?

회신내용 2022-07-12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자가진단 앱은 유치원 및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자 및 감염 개연성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등교 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자가진단 앱의 운영 여부 및 진단항목 등에 대해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당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자가진단 앱 응답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미응답에 따른 등교제한 등 불이익은 없으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9 유아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청

질의요지

유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09-30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유치원 및 학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어, 교육부가 단독으로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실외 마스크는 남아있던 착용 의무 해제('22.9.26.), 상황에 따른 자율적 실천은 필요
- 학교는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밀집도 높은 시설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역수칙 중 하나이며,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개별 공간이나 야외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교실 내 환기 등 여건, 밀집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9.26.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이에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관련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학교방역지침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0 학교방역인력 지원 중단 요청

질의요지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었는데 학교방역전담인력 배치를 중단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10-06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라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정적 학사운영 등을 위하여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방역 전담인력은 등교 시 발열체크 지원 및 환기, 생활수칙 지도 등 학교 방역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현장 방역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방역인력을 2학기까지 유지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유지여부는 감염상황 및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61 교내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

질의요지

휴대전화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7-08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휴대전화 사용 등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해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을 포함한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수업시간 외 학교 일과 시간(휴식시간,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학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신 부분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교교육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2 공공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질의요지

공공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책과 가까워져 사고를 더욱 넓힐 수 있고, 사서가 꿈인 아이들이라면 한 발짝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공도서관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내용 2022-06-29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우리부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19~'23)에 학교도서관 안팎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 제공 및 공공도서관,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공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주신 의견에 대해 시도교육청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6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의무화 실시

질의요지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아 모방 위험도가 높으며 거짓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신내용 2022-09-20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귀하가 제기하신 제안은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유해 콘텐츠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 현재에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 함양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21.9.24.제정, '22.3.25.시행)에 따라 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이외에도 우리부는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안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학생참여단·교사참여단 운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미디어교육플랫폼(미리네) 운영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는 학생들이 미디어를 건강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4 특목고 및 기숙사형 고등학교 생활 개선 건의

질의요지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수업시간 외 기숙사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자율화하고 청소년기 적정 수면시간 8시간을 보장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1-17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우리 부는 학생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의 학칙 기재사항 예시(용모,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를 삭제하여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말씀하신 전자기기 사용, 수면시간 등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과 협력하여 학교규칙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제·개정 권고 및 컨설팅 실시 등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부는 '21년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기숙사의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제고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 학교 내 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요청

질의요지

전국 모든 학교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단속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내용 2021-11-08(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별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불법촬영 예방 조례 등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관계 공공기관(경찰서, 지자체 등), 학교가 협력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내 시설물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관련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6 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질의요지

최신 윈도우 운영체제 및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의 K-에듀파인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개선과 점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2-05-30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 현장에서 Windows 11 OS 및 엣지 브라우저로 K-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IE 호환모드' 활성화와 같은 추가적인 설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윈도우 엣지(Edge) 브라우저에서 Alt+F키를 누른 후 S키를 누릅니다. ② 화면 왼쪽 목록에서 '기본 브라우저'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화면 오른쪽 Internet Explorer 호환성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Microsoft Edge에서 사이트를 열어보세요'는 **'항상(권장)'** 선택 - '사이트를 Internet Explorer 모드로 다시 로드하도록 허용'은 **'허용'** 선택 - Internet Explorer 모드 페이지에서 **'시도교육청 K-에듀파인 주소'** 추가

- 한편, 브라우저 다양화에 따른 K-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은 'K-에듀파인 선진화 구현 중점과제'에서 미래 업무환경 대응과제(브라우저 호환성 개선)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민원

67 천연 잔디 운동장 유지·관리

질의요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천연 잔디로 조성된 운동장이 있는 학교입니다. 오래전 방송 뉴스를 통해 학교 운동장 잔디에 제초제를 뿌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갔다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에 아이의 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주 수요일 학교 운동장에 제초제를 뿌렸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에 제초제 작업이 가능한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시설과, 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 고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7조(운동장 관리)제1항은 운동장이 유지 관리되는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5호 제초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서는 교내 수목 및 잡초의 방제 시 제초방법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 약제 사용을 검토하되 병해충에 따라 적합한 저독성 약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천연 잔디 운동장의 유지·관리 및 교내 잡초 방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8 대학의 실내 공기질 측정

질의요지

대학교 시설의 실내 공기 질 측정을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공기질 측정 등 학교의 공기질 정기점검 횟수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고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통해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9 전학생 학생건강검진 관련

질의요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전학을 왔는데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는 아직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었는데 전학을 온 학교에서는 이미 건강검진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며 무상으로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특수 및 기타학교도 동일학년 적용)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진기간은 3월~12월로 학교별로 학기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학생은 당해 연도에 해당 학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따라서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한 사항은 전학을 온 현재의 소속 고등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학생건강검진기관 신청 절차

질의요지

학생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학교검진기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교의 장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교육지원청)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의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초·중·고 학생의 체력평가

질의요지

학생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력평가가 있는데 체력요소 중에서 비만도 측정이 있습니다. 그 비만도 검사와 체질량 측정을 의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2항을 보면 '신체의 발달상항,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상태 검사는 학교의 장이 개시를 하고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이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만도 검사는 건강조사 또는 신체발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건강검진이 아닌 신체능력이나 건강조사, 정신건강상태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 학교도서관 폐기 대상 자료 활용

질의요지

학교도서관 자료 중 폐기 대상인 자료를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학교도서관 자료 중 폐기 대상으로 확정된 자료는 학교 내부 계획 등에 따라 매각 외에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에 배부하거나, 학급문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학교배상책임공제 관련

질의요지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건물 현관의 중앙 복도에 있는 기념품을 전시하고 있는 유리관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활용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공제사업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이외의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학교소유·관리 물품 및 학생 개인 물품 파손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4 학생들 수업모습 영상 촬영 시 개인정보 동의서

질의요지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 목적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에 규정된 학생지도, 평가 등이나 제25조 학교생활기록 등을 위한 경우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업시간에 동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촬영된 동영상이 법령이 정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용, 처리하여야 합니다.

75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모듈러 수주

질의요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이 되면 공사 관련해서 모듈러라는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듈러의 경우 학교장이 인근 지역의 업체에 수주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정한 기업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모듈러 수주는 시도교육청 권한 사항으로 여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제도

76 교복 디자인 관련

질의요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복이 점점 일본 교복과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교복디자인을 보급해주세요.

회신내용 2021-11-02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복 착용여부, 디자인 등 학생 복장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며,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반영·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각 시도교육청별 교복 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복 간소화, 편한 교복 등 학생들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디자인 선정 및 착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학생 교복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의무교육 근거 법령 질의

질의요지

1960년~1969년도에는 어떤 법을 근거로 초등학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언제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1960년대 당시 조기입학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02-1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우리나라 초등교육 의무화를 법제화 한 것은 1948년 「헌법」에 명시된 초등 무상·의무교육을 근간으로 1949년에 제정·공포되어 1950년에 시행된 「교육법」부터입니다. 이 법은 헌법에서 정한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화하여 지금의 초등교육 학제(6년)의 근간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의 학교설치 및 보호자의 취학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0~1969년까지의 초등 의무교육도 1997년 12월 13일 현행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교육법」의 적용을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만6세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었던 취학연령을 조기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추세를 반영하여 만5세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학교의 수용 능력의 범위 내에서 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1995년에 「교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78 「초·중등교육법」 해석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 이라고 쓰인 이유가 있는지? 〈자녀 또는 아동이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1일〉 이라고 써도 되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2022-10-17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국가의 법률 어문은 보통 시간의 흐름 순서로, 오해의 소지가 적은 문구로, 어순에 맞게 쓰여져 일반 국민의 가장 쉬운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문의주신 〈자녀 또는 아동이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1일〉이라고 쓰여질 경우, 아동의 생일이 3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일이 아동이 7세가 된 날보다 앞서게 되어 시간의 흐름 상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 따라서 앞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로 현행 법 조문이 작성됨을 안내드립니다.

79 초등학교 돌봄특기적성 강사 고용보험 적용 여부

질의요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돌봄특기적성강사도 동법에서 정의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5-1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2021년 7월부터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2022년 3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등 사회보험 고지·납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제1항제9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우리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연계 방과후학교 강사, 토요방과후 강사'만 해당됨을 안내하였습니다.

80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폐지

질의요지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방과후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1-0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학교장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야간자율학습은 단위학교가 학교시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강제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 참여 여부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1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절차

질의요지

학교체육진흥법 등 법령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임용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2022-05-02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시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사항들을 평가한 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에 따라 (재)임용 시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합니다.
- 단,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절차는 시도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의 형태(무기 계약직 계약, 학교장 계약,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계약, 시도체육회 계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선정

질의요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검도가 제외되었는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08-23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2022년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학교 수 100개교 미만 종목제외 ▷ 축전 운영지원단(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에서 합의한 '축전 운영규정'을 근거로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 검도종목 학교스포츠클럽 등록학교 수('2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25개교
- 다만, 축전 운영지원단에서 매년 감염병 상황, 시도별 수요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종목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 폭염 재난 대처에 대한 대책 마련

질의요지

폭염이나 혹한기와 같은 기후 재난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한 학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7-11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교육부는 폭염 재난에 대비하여 「학생 행동요령 및 학교 조치사항(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실외수업을 자제하거나,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신속히 학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매년 시도교육청과 함께 폭염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학교안전정보센터(schoolsafe.kr)를 통해 학생들이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4 학교 재난대비훈련 실시 주체

질의요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재난대피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 실시 주체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4-05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모든 학생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6시간 이상의 재난안전교육을 포함한 학생안전교육을 매년 51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안전교육은 교원, 안전교육전문기관·단체 소속 직원, 재난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 중 재난 대피 훈련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참고 5에 따라 재난안전교육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훈련은 교원, 안전교육전문기관·단체 소속 직원, 재난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85 등하교 시 교사의 통학지도

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지도 활동이 교사의 직무인지요?

회신내용 2022-03-07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학교장은 「학교안전법」 제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선언적 의무를 부여받으며,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법」 제2조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등하교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역시 학교장에게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등하교 시간 통학지도 활동의 교사임무 여부는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성(시급성, 학생 연령, 통학 거리 등)에 기반하여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6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요청

질의요지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응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주기를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2-01-0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우리 부에서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미세먼지 빈발시기 전 학교별 자체점검·교육청 보완점검·교육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응조치와 공기정화장치 등 관리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에너지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및 기타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24년 완료예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관련 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조치들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민원

87 한복교복 선정학교 명단 확인방법

질의요지

중·고등학교 교복을 한복형태로 입는 학교가 19곳이라는 신문기사를 접하였습니다. 19곳의 학교이름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한복교복 보급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한복을 가까이 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한복교복 학교 선정 및 한복교복 보급사업 참여학교 모집 등 한복교복 보급사업에 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산업팀 한복교복 참여학교 모집 사무국 (02-398-1632)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한복교복 참여학교 선정결과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이트 (www.kcdf.or.kr)의 알림소식 - 사업공모 - 공모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8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질의요지

2022학년도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찾고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2016년 2월)'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취학의무 대상자에 대한 취학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2022학년도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은 소속의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매뉴얼

질의요지

교육부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과 관련하여 학적관리 등 학교현장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취학 또는 편입학하는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인 학생의 효율적인 학적관리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 「2022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센터(www.edu4mc.or.kr) - 운영자료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원 인사·복지

90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재임용되면 재임용 이전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10-25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교원의 재임용일이 퇴직일 당일 또는 익일이 아닌 경우, 퇴직 후 임용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퇴직급여 신청을 하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 후 동일기관·법인으로 당일 또는 익일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고 계속 재직 중(동일법인의 경우 전입)인 것으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교원의 겸직허가

질의요지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과 관련하여 교원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2022-10-05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우리부에서는「교원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 지침(교원정책과-8970, '21.11.18.)」을 통해 교원의 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복무 지침을 안내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중에 교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타인의 초상권 침해 금지 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일상적인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겸직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네이버TV, 유튜브 등):
     (가)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블로그 등):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따라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에는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와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 겸직허가의 신청은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이뤄지므로, 계정에 따라 겸직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 처리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겸직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교육공무원 난임휴직

질의요지

난임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9-29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불임·난임휴직은 종전 질병휴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육공무원법」 개정('19.8.)으로 분리·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에서 해당 공무원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일반 국가공무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불임·난임 휴직 시에 봉급, 휴직기간 등은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휴직 후 임신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임·난임휴직은 육아휴직과 별개의 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3 교육공무원 자율연수 휴직

질의요지

공립중학교 교사의 교원자율연수 휴직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08-25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며, 동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제11호에 따라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합니다.
- 또한,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종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제3항 각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르는 재직기간에 합산·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동조 제1항 및 제4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94 방학 중 교원 복무

질의요지

교원들에게 방학은 휴업일에 해당하는건지요?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신청이 없는 경우 휴업일에 교원도 정상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신내용 2022-07-26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방학은 출근의 의무가 면제되는 토요일,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른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학교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소속 기관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이지만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 신청을 하지 않고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출근해야 합니다.

95 교원 임용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 인정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 비례 경력 인정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7-21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에 따르면,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인정되며,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 교원 간 갈등 사안처리

질의요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관련하여, 교사들 간의 갈등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상인지요? 또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04-13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가 아닌 교사가 다른 교사의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안이라도, 「교원지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 간의 갈등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충심사청구, 갑질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직장 내 상사 및 동료 등의 갑질, 괴롭힘, 부당행위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각 시도교육청(감사부서 등)의 온·오프라인 창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운영 안내」매뉴얼 배포(교육부 교원정책과-1948, 2022.3.11.)
-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교사는 피해교원이 되며 학교장은 법령에 따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교사간에 발생하는 사안에서 학교장은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학교장- 교사간에 발생하는 사안은 고충심사, 갑질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97 교원 업무 경감 관련

질의요지

교원들은 공문처리, 상담, 연구 등 학생을 가르치는 본업 외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1-11-29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1항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는 학교장이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원의 업무는 관할 교육청의 정책, 학교의 지역적 여건, 학교 교육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학교별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다르고,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의 수 및 직종별 구성 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 부는 학교로 유입되는 업무의 총량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없이 학교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시도별 주요 사례
  ① 기간제 교원, 강사 등 학교 인력채용 지원 시스템 마련(서울, 대구, 광주 등)
  ② 정수기 수질검사, 놀이시설 관리 등 학교 안전관리 업무 직접 수행(울산)
  ③ 학교 요청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 고도화(충북)
  ④ 학교의 반복 업무 이관, 학교 상시지원 콜센터 등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경남)

98 교원의 가족돌봄휴가

질의요지

교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가가 남았을 경우 자녀 및 가족 행사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1-11-22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에 의거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하고,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업일 중의 연가에 대해서는 동 예규 제5조제1항에 교원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한편, 수업일이 아닌 휴업일의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자녀 및 가족행사가 1) 휴업일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법정휴가일수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가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2) 수업일 중이라면 동 예규 제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를 소속 학교의 장이 해당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사유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 승인할 사항입니다.

99 장애차별금지 관련 교육공무직원 채용 문의

질의요지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장애인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3-17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 교육공무직원은 각급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교육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통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천분의 36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 고용 관련 세부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 및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의 모집공고, 복무규정,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 개선

질의요지

사용자 입장에서 현재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 시스템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구축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 급여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01-07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 현재 '23년 3월 시행을 목표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곧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대체될 현 차세대 나이스에 교육공무직원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개발 구현의 복잡성 및 예산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교육공무직원 급여 프로그램이 포함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101 교장 임용 제청

질의요지

22년 올해부터 교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교장으로의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21년인 작년 5월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21년 11월부터 정직에 들어갔는데 이 페널티가 올해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육부는 지난 2021년 9월 교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인사·복무 주요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22.1.1.전(21.12.31.까지)에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말소 기간(최대 9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되며 2022.3.1.자 교장임용부터 적용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징계 말소 기간 :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102 명예퇴직 교원 급여

질의요지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인 교사의 급여일도 매달 17일인데 그러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한 날의 급여가 9월에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교원정책과)

- 우선 교육부 소속 또는 교육부 소관 공무원의 급여일은 매월 17일입니다. 또한 8월 31일에 퇴직하는 교사의 8월 급여 역시 8월 17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보수를 8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근무할 것을 상정하여 당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8월에 퇴직하는 교원 역시 8월 17일에 이미 8월분(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지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으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03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후 소속 직원의 신분

질의요지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로 전환할 경우 사립고등학교 소속교원의 신분도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통폐합이나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지정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에 따라 특별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 사립 초·중등 교원의 초과근무

질의요지

사립 중·고교에 근무 중인 교원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근무시간을 임의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한가요? 지인이 오전 8시 20분까지 학교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8시간 40분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아니면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40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근무를 한 것은 맞습니다.
- 또한, 해당 교원의 복무담당자는 학교장으로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소속 학교 교원들에게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시간이내의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05 재량휴업일 교원의 당직 근무

질의요지

학교에서 교사에게 재량휴업일에 강제로 당직근무를 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교원정책과)

- 교원의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은 없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 교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문의

질의요지

정신과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유치원 교사 임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만 있어도 임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교원정책과)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각각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신계통의 판정기준은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 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중인 것이 불합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교원의 임용권한이 있는 임용시험을 응시할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자격

107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어린이집 교생실습 가능 여부

질의요지

특수학교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생실습을 가려고 하는데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교생 실습을 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10-14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6조제4항에 의하면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 · 중등 · 고등 ·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 · 지정 · 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 · 중등 · 특수학교

- 따라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교육부고시」제6조제9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인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3.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08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범위

질의요지

학교에서 각각 1년 6개월씩 영어와 심리학의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경력으로 인정받아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요건이 성립하는지요?

회신내용 2022-09-20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위한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 또한,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전문상담교사 1급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표시과목 일치)이 있는자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학교급·표시과목 일치) 교육경력의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117)〉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 다만,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경력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별표2 중 전문상담교사 1급란 제1호에 대한 무시험검정 시 교육경력은 2015학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만 인정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교직과목의 원격수업 운영

질의요지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한 전공 및 교직과목 수업에도 원격수업 진행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09-20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전공 및 교직과목의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및 교직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
>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을 위해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이상), 교직과목의 교직이론(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3과목 6학점이상)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원격수업만으로 일괄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음. 다만, 교과목에 대한 교육목적 달성 및 교수·학습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전자 매체와 웹을 기반으로 융통성 있는 학습 환경 제공, 다양한 학습방법과 매체의 결합·활용,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식의 구현 등과 같은 원격수업을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일부 편성·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의 교직이론, 교직소양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교과목 교육과정을 원격수업만으로 일괄하여 편성·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교과목의 교육목적 및 교수학습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교과목의 교육과정 일부에 원격수업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교직과목 관련하여 학기당 실시 가능한 원격 수업 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학칙을 통하여 원격수업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고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육목적과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원격수업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다만,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양성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공 및 교직과목 교과목의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군복무자 임용시험 및 유예

질의요지

내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자격으로 중등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격 시 전역까지 임용 유예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2021-12-10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법령에 따른 교원 자격취득자(취득예정자)일 경우, 각 시도교육청 공고문 등에 따라 군복무 중인자 또는 군복무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으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복무기간 중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포함)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에 따라 그 사유을 기재한 임용연기원서 및 전역예정증명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시도교육청 인사담당부서 등)에게 제출하면 전역예정일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해당 답변은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용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111 사범대학 성인지 교육 이수

질의요지

사범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성인지 교육을 한학기에 2회 수강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06-03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우리 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통하여, 성인지 교육을 특정 학기 또는 특정 학년에 집중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74쪽)]
>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정학기 또는 특정학년에 집중 운영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 ㉢ 대학별 성인지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 내용, 방식, 기간, 이수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 특정 학기에 2회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 등을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2 교사결격 사유(마약 중독 여부 검사)

질의요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마약검사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검진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9-20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검진방법은 소변검사 또는 혈액, X-RAY 검사방식도 가능하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가 가능한 TBPE를 1차 검사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로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 다만,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보다 더 많은 검사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1차 TBPE검사 결과 양성반응 시, 2차 정밀검사로 4대 마약 시약 검사를 추가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113 교원의 마약류 판별 검사결과서 제출 문의

질의요지

교원자격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입니다.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검사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서를 제출할 때 검사결과서에 음성인지 양성인지만 나와 있으면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검사 결과서에는 개인신상확인정보(이름,생년월일,주소 등), 검사종류, 결과(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병원 확인(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학 중인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 성인지교육 이수 관련

질의요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을 보면 1년에 1회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학년 때 사정으로 인해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학년 때인 올해 2번을 들어도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202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4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정학기 또는 특정학년에 집중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횟수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사례가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주시기 바랍니다.

115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질의요지

현직 교원은 아닙니다. 교원자격증을 분실하여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데, 출신 대학은 수도권에 있고 현재 거주지는 지방입니다.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 출신 대학 행정실에 문의를 하니,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하여 우편으로 보내주면 재교부한 교원자격증을 우편으로 보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교부한 교원자격증을 받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대학에서는 빨리 발급을 받으려면 대학에 직접 오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대학에서 안내 받으신 바와 같이 교원자격증은 우편민원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116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원임용시험 문의

질의요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교원임용시험은 몇 년도 임용시험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개정된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적용되는 해의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되며, 2022년 12월 최종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교원임용시험의 시행공고, 원서 교부·접수, 시험 실시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제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교원임용시험 시 졸업예정자 기준

질의요지

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 2월말 이내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로 2022년에 있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야 하지만 집안에 사정이 생기면서 수강을 다 듣지 못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하기 위한 학점이 부족하여 2023년 2월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2023년에 1학기까지 또는 2학기까지 더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 해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2024학년도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교원임용시험의 시행공고, 원서 교부·접수, 시험 실시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관련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고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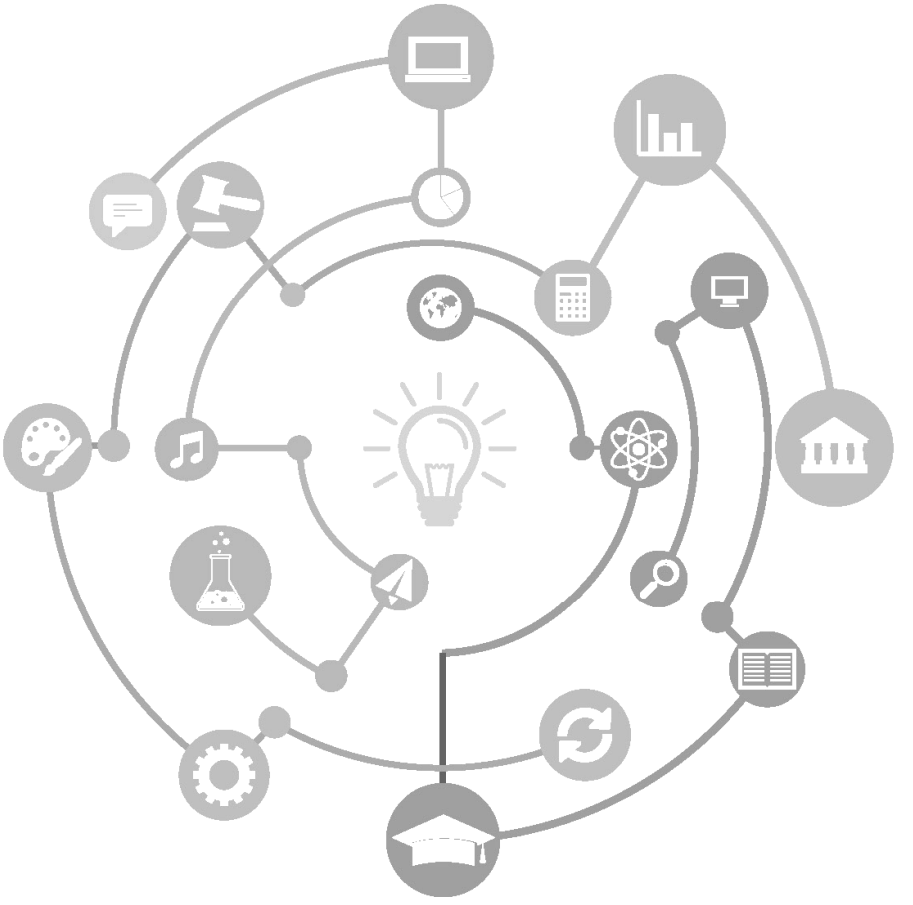

대학 학사·제도

01 다자녀장학금 성적기준

질의요지

다자녀를 위한 국가장학금은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회신내용 2022-06-28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다자녀장학금을 포함한 국가장학금은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학업동기 부여' 및 '국가지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성적 요건(직전학기 80/100점(기초·차상위의 경우 70/10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학자금 지원 3구간 이내)의 경우 학업 전념의 기회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14년부터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여 현재 학자금 지원 1~3구가의 학생에게 최대 2회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때 상대평가, 절대평가 등 성적을 관리하는 구체적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기준은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학교에서 부여한 성적을 백분위로 환산하여 80점(기초·차상위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히,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은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을 입력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와 해당 대학의 교과 성적 관리 방법은 연관성이 낮음을 안내드립니다.

0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대상

질의요지

국가장학금 수혜를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신청학생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모의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지요?

회신내용 2022-05-18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는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인 경우 학자금은 대부분 신청학생과 그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에,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부·모 모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03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질의요지

저소득층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면제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08-16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소득 발생 시점까지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보다 전념토록 도입된 대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비 대출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에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이자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모두 이자를 면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질의요지

박사논문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 기관과 조치 기관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1-11-18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습니다.
- 또한, 동 지침 제18조에서는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종료 후 검증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동 지침 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판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05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질의요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학생 중 6학기 초과자에 대한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3-22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

-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19학년도 1학기부터 한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 해당 취지에 맞게 대학에서는 장학금 지급 원칙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06 교환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질의요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외국에 있는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15시간 당 1학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의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지침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대학교 교환학생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침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점 당 이수시간에 대한 내용 외의 사항은 양 대학 간 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니 대학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대학생의 출산 시 공결 관련

질의요지

대학생인 딸 아이가 결혼하여 임신을 했는데 출산일이 다가옵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니 정부에서 대학생 본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공결로 인정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2020년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교육부는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결석 시 공결처리 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대학(국·공립, 사립)에서는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공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녀가 재학 중인 대학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대학원 신입학생 입학금 반환 가능 여부

질의요지

올해 대학원 1학년으로 신입학을 하는데 1학기 전에 휴학을 할 경우 대학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대학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입학을 하는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입학금도 납부를 하였는데 휴학을 하면 입학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대학 입학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법령 상 입학생은 입학일 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입학일 이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학이 학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환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9 이혼 가정의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질의요지

다자녀장학금(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구간 설정 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이혼 가정의 경우 가구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게 되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미혼인 경우 신청학생과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혼 후 관계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양관계단절이 있다면 심사를 통하여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0 방송통신대학의 지방대학 포함 여부

질의요지

방송통신대학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지방대학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학교로 수도권 소재가 아닌 지역 소재의 방송통신대학이라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지방대학'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대학원 등록금 현황

질의요지

개별 대학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등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청년지원과)

- 개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대학 또는 대학원명을 검색하시고 '대학개별공시바로가기 → 공시정보 → 대학재정/교육비 → 8-차. 등록금 현황'에서 등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신분유지

질의요지

계약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2월 졸업예정이었으나 학점 부족으로 한 학기 더 다니게 되면서 8월에 졸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존에는 일반 직원이었다가 11월에 공동대표 즉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는데 대학 측에서는 이 경우 계약학과 학생으로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안내해 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졸업을 한 학기 앞 둔,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신분이 변동된 학생 개인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할 당시의 입학 학생의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 채용약정서에서 제시한 고용요건이 변경된 것은 입학취소나 제적처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신분유지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대학 인사·복무

13 교원 퇴직 시 정부포상 제한 근거

질의요지

퇴직교원 포상 시 견책 징계로 추천이 제한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1-19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퇴직교원 정부포상은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동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퇴직공무원 포상 시,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됩니다.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와,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의무 위반,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와 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재직 중 견책처분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추천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위 요건을 고려하여 추천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에 게시되어 있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대학 전임교원 겸직(유튜브 활동) 문의

질의요지

대학의 전임교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규정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3-29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겸직 등 대학 교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해당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적용되며,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위 준용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해당)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

- 이에 따른 금지대상 영리업무의 범위 및 겸직허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대학의 교원은 다른 직무(영리목적 업무 포함)를 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및 겸직허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행정규칙 메뉴에서 열람 가능

- 따라서 대학의 교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교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5 겸임교원 등 신규채용 자격 연령

질의요지

대학의 겸임교원 임용규정 및 강사 임용규정에 겸임교원 및 강사 등의 신규채용 연령 자격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겸임교원 및 강사 등의 신규채용 및 재위촉시의 연령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5-20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 「고등교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겸임교원 및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년, 사립대학의 겸임교원 및 강사는 개별 대학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정년 연령 이내에서 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6 사립대학 교원 복무

질의요지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적 국외여행 신고(사전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대학교 학칙의 규정가능 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6-23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이에 공무 외 국외여행과 관련한 복무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7.공무외의 국외여행' - '가.여행사유 및 기간' 및 '나. 근무사항의 처리'
>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방문, 견문,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연락처에 여행 중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표시
>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행정규칙 메뉴에서 열람 가능

- 이에,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학교 자체 규정(학칙)은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관련 질의

질의요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2항의 '누적 채용인원'은 현 시점까지 신규채용한 교원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이해되며, 이는 현 시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이력을 기준으로 합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직인원'이 아닌 '채용인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가 적절한 것인가요?

회신내용 2021-10-21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동 조항에서는 '채용인원'만을 규정하고, 퇴직 등의 사유에 대한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재직 여부가 아닌 채용이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8 국·공립대 조교 신분

질의요지

국·공립대는 국가기관인데 조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지요? 그렇다면 연금, 공무직 전환 등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06-27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국·공립대에서 근무하는 조교의 채용 형태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조교, ② 대학의 회계로 채용하는 대학회계직원인 조교, ③ 일반적인 단기간 근로형태로 채용하는 조교입니다.
  ※ 관련규정:「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5조의2제4항
- ①의 교육공무원인 조교는「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재임용 횟수 등은 개별 대학에서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와 ③의 형태(이하 '기타 조교')로 채용하는 조교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법」 상의 조교가 아닙니다.
- 교육공무원인 조교는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며,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인 조교에 대해서는 공무원증 발급 대상입니다. 교육공무원인 조교에 대해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 대학 교원 겸직 관련

질의요지

4년제 대학교 교원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기업체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교원이 본인이 창업하여 대표인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2-11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나(예외적 허용), 대학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항(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가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 제1항(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직 가능),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등 개별법에서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업체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개별법상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 사항으로, 해당 겸직허가의 신청 절차, 심사 및 허가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law.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초빙교원 퇴직금 관련 법령 해석 문의

질의요지

초빙교원의 임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 다목("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의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5-13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해당조문은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등의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 대하여서도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강사와 겸초빙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8.12.18.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9.6.11.개정)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2018.12.1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6.11.) 이유 참조
- 위와 같은 법령 개정 취지, 규정의 문언, 법령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 다목의 규정이 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 위 시행령 동조항 나목에 따르면 초빙교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에 의하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초빙교원이 1년 미만 근로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국립대 조교 복무 문의

질의요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조교가 유연근무 등 재량근무제 시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5-13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재량근무제는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되는 근무형태로,
- 재량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해당 업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립대 조교의 재량근무 승인 여부는 해당자(신청자)의 구체적 업무내용 등에 따라 해당기관(신청자의 부서장 및 기관의 복무총괄 부서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2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

질의요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과거 실업팀인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선수로서 근무(상근)한 경력은 상통규정이 적용되어 경력 환산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06-02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의 2. 2(이하 '기준표') 바.에 따르면,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이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임용 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석,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 기관이 법령의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인 경우 10할 이내,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인 경우 10할이내,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인 경우 9할 이내에서 경력합산이 가능합니다.

23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대학 교원 휴직

질의요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이 휴직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 제24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원은 지능정보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가능

회신내용 2022-03-17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4조 제1호에 따른 휴직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의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에 해당하여 승급기간 산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4호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호 내지 제9호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의 휴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범위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제2호를 살펴보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이 위 민간단체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교원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휴직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기업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제2호에서 규정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 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임용기간 미산입 등은 위 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함

24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

질의요지

국립대학교 소속 전임교원(교육공무원)은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근무지내 출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2-08-03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며,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는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근무지내 출장'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5 당연퇴직 사유 발생 교원에 대한 퇴직 관련

질의요지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교원에 대해 어떠한 퇴직절차를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처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2022-08-10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두43806 판례에는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하여 볼 때, 퇴직일은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

질의요지

사립학교 내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갑질로 판단하여 총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내용으로 의결하여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2022-08-10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징계요청을 하는 것은 민원인의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이는 소속 대학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7 강사의 퇴직금 지급요건과 산정 기준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어 3년 동안 1차, 2차에 걸쳐 재임용된 후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09-07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강사의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 요건에 따르며, 1년 이상 재직자 중 2개 학기 모두 주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은 대학에서 설정하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직 대학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그러나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3년까지 임용한 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고, 그 공개채용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 다만,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8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질의요지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립대 직원 중 근무성적이 좋은 한 직원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용 공정성, 비리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02-09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사립대학 직원 채용은 사립학교법」 제70조2제2항에 근거합니다. 또한, 대학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해당 대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인사 규정으로 정함을 안내드립니다.

29 대학원생 처우개선 요청

질의요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2021-12-16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교육부는 '18.11월 대학원생 조교의 복무조건 및 처우개선 등 권익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으며, 지난 '21.11월에도 동 가이드라인 안내를 통해 대학원생 조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민원

30 대학 채용 단기 계약직 근로자 급여

질의요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사업'의 단기 계약직으로 대학에 채용되었는데, 처음 채용 시 급여를 250만원 준다고 했었는데 지급된 금액은 205만원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에는 얼마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기본계획〉 의 1인당 월 지원금 2,325,083원은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기초단가를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나온 일종의 지침으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은 대학마다 4대 보험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따라서 채용공고의 내용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해당 대학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31 사립대학 교수의 보직 관련

질의요지

사립대학의 정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정년퇴임 후 석좌교수로 가면서 학(과)장의 보직을 맡을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에서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대학의 인사규정 등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2 사립대학 이사장 겸직 가능 여부

질의요지

기업체의 대표가 사립대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기업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에 의하면, "이사(이사장)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 및 해당 학교의 정관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3 사립대학 행정조교의 교육경력 인정 문의

질의요지

사립대학교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했던 경력을 초·중·고교 교원 등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시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어문계열의 교육과를 졸업하였는데 예·체능 학과의 대학조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교육부 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1〕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행정조교로 근무를 한 경력이라면 5할 이내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4 전임교수의 타 대학 강사 겸직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말에 타 대학교의 강사로 출강하는 것이, 소속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고 겸직을 하는 것도 강사법(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대학의 전임교수가 소속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고 주말에 타 대학의 강사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고 겸직을 하는 것은 강사법(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사립대학교 교원 징계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 관련 비위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준용해야 한다면 준용해야 하는 그 근거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4조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기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에 의거 사립대학교 교원이 성비위 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 교수의 지자체장 겸직 가능 여부

질의요지

교수가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시장직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교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교육감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법」으로 선거에서 당선 시에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다른 정무직이나 선출직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재직을 하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까지만 명시하고 있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입제도

37 재외국민 특례전형

질의요지

현재 거주 중인 국가 정국의 불안정 및 경제난 등 사유로 국내에 귀국하여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특례 입학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07-25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재외국민 특별전형 12년 특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통지원자격을 정한 것은 편법 및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공통지원자격 충족 관련 세부사항은 대학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에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 발령한 경우에는 공통지원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조치와 미얀마 내전(여행경보 3단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여행경보 4단계)에 대한 조치 등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세부 지원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모집 연도별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학요건 및 국외체류기간에 대한 예외인정 증빙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충족여부에 관하여는 진학을 희망하시는 대학의 입학처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지역저소득층 의무 선발 운영 사항

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학에서는 지역인재 및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2022-03-14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 지역인재 및 지역 저소득층 선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형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과 입학 전체인원(정원내·외를 모두 포함한다)중 지역인재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인재 및 지역 저소득층 선발을 위한 전형 운영여부 및 그 방식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입학비율 산정식
- 대학이 기존에 정원 외 전형(기회균형, 농어촌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지역 저소득층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39 대학 지원 시 현역 군인에 대한 불이익 개선 요구

질의요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재직자 전형의 자격요건 중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에 군 휴직이 해당한다는 대학 측 입장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02-21 (지역인재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귀하께서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에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의 조건을 갖춘 경우, 원서접수일 당시 군 휴직 상태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수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민원

40 대학 편입학 시 제출 서류

질의요지

대학에 편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편입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 전적대학의 학적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대학이 학적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대학은 아래의 법령에 의거하여 학적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7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 · 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에 의거 학적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교육부의 「대학편입학전형기본계획」 에는 학적부를 편입학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41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질의요지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경우에도 대입에서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인재선발제도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정원 외 특별전형의 하나인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어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42 수시전형 경쟁률 공표

질의요지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수시전형 경쟁률을 유ㅇ이나 진ㅇ사를 통해 공표하고 있는데 OO대학에서는 경쟁률을 공표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대학의 입학관리처로 문의를 하니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알려주었는데 다른 대학들처럼 왜 공표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미달학과가 있다는 등의 여러 사유를 들어 공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표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현행법상 대학 입학전형 경쟁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으며 공개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학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43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3년 특례)

질의요지

재외국민으로 등록은 안하고 국내 법인이 100% 외국에 투자하여 외국에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가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도 대입에 있어 재외국민특별전형(3년 특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3년 특례, 재외국민특별전형은 부모와 학생의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서류제출 과정에서 자격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교부의 재외국민 관련 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부모와 학생이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고 학생이 초중고 과정 12년을 이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4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질의요지

직업특성상 지방 순회를 많이 하는데 내년 6월경에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2022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는데 나중에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려고 할 때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하나요? 6학년 때 아예 전학을 가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농어촌 특별전형은 학생과 부모의 거주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유형Ⅰ'은 학생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학생 본인은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유형Ⅱ는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유형Ⅰ'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충족기간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이며. '유형Ⅱ'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입니다.
- 각 유형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부모 거주 충족기간을 고려하여 이사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5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질의요지

아이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취업도 잘 안되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의 법령상 지원 자격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입니다.

46 의대 등 지역인재전형에서의 가족요건

질의요지

의대 등 지역인재 선발과 관련하여 2021년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가족이 해당 지역에 동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학원가에서는 가족도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는 지역인재전형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2항〈2021.3.23.〉 개정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역인재의 거주요건에 대한 규정은 2022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거주하며 지방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자격요건에 가족의 동거나 거주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추후 가족(동반 거주 등) 요건이 신설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대학운영

47 대학원대학 개설 가능 여부

질의요지

지방 소재 전문대학에 대학원대학을 개설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08-01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대학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개설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며, 대학원대학은 전문대학과 구분되는 별도의 고등교육기관이므로 대학을 설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원대학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부 홈페이지 〈주요메뉴 바로가기〉, 〈대학(원)교육〉에 '대학 설립을 위한 신청서식 및 작성 요령'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8 사립대학 기본자산 매각 방식

질의요지

사립대학 기본자산(부동산)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07-11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원칙이 준용되고, 사립대학(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매각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립 대학(법인)의 기본재산을 지명경쟁입찰 내지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으나, 그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사립대학(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신고수리)를 받아야 하고, 이때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금액 이상으로 재산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처분 계약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9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질의요지

사립대학의 법률자문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차보증금이「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사립학교법상 명백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회신내용 2022-06-02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질의하신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은「사립학교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인지 판단해야하며, 임대보증금을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정한바 없다면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으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의 감소가 곧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의 보관·유지하는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73): 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정관이나 이사회의결에 따라 정하지 않았다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아니며,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의 감소가 곧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고, 그 임대보증금 자체의 처분을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이를 보관 유지하는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야 함.

- 다만, 계약당사자(임차인)와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질권 설정은 자산의 감소가 없고, 임대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보여지는 바, 우리부의 허가(수리) 사항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대학발전기금 모집 관련

질의요지

① 대학 발전기금의 모집액의 일정금액을 모집하는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② 대학교와 물품구입 등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에게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③ 업체에게 발전기금을 받는 것이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7-01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대학발전기금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으로 생각됩니다. 「기부금품법」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에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사무직원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우리부에서는 내부규정과 이사회 의결 및 예산편성 절차 없이 인건비성 경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사립대학(학교법인) 예산 유의사항 및 2022회계연도 예산 제출안내, '21.12.31.)
-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 기부금품 모집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지급 가능하나, 직원 보수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점, 수당은 보수에 포함되므로 자체 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금품입니다.(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또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는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발전기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 2021.12.23.). 따라서, 대가성이 있는 금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처리를 위법하게 한 것이며, 다만 해당 금원이 실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급부가 있는 발전기금인 경우를 가정하여, 대학발전기금 모금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학교로 모금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외대상), 뇌물죄의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1 법정기부금으로 환자치료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 기부한 자가 시설, 교육, 연구 목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로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10-13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2항에서 적립금은 그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비 지원'은 특정목적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속병원은 기부자에게 위 적립금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부금을 사용할 목적별 비중을 기부약정서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그 약정된 비중에 따라 특정목적적립금으로 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2 구내식당 임대 관련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학 시설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위탁운영하는 경우, 식당을 무상임대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행위인지 여부와 위탁업체에 대한 임대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3-04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위탁 및 임대 계약은 학교법인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무상임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 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계약별로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이고,
  * **(예시)** 임대료 대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거나,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는 대신 식사 단가를 낮추는 등의 계약조건을 통해 교비회계 발생 수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 계약 조건은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해당 계약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저해 되거나, 교비회계 발생 수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3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질의요지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멸실이 권리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본재산을 멸실할 시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04-27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립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의 멸실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부의 허가(수리)를 받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32조(대손강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54 대학 정원감축 요청

질의요지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대학 정원감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역략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해주세요.

회신내용 2022-01-07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적정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 역량을 갖춘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지난 2021. 12월 발표하였습니다.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일반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또한,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대학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지충원율 미달 대학은 권역별 충원율을 고려하여 정원 감축 권고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원 외 선발과 관련하여 교육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이 과도한 정원 외 모집으로 전체 학생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혁신지원사업비 조정과 연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5 대학 재정지원 관련

질의요지

전국에 경쟁력이 없는 부실대학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2022-10-11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

- 우리 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최소 수준의 교육여건 담보를 통해 국고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비환원율*을 포함한 6개 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차등 제한을 두고 있으며, 매년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비환원율(%): [총교육비(기계기구매입비 포함)/등록금수입총액] X 100

56 국립대학회계 운영수당(210-06목) 지급 가능 범위

질의요지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에게 국립대학회계 운영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06-24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기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와 관련한 경우는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여기서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소속 대학 교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 시 소속대학 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총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7 국립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증액

질의요지

대학 내 교원과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의 총 정원이 증가하여 정원 증가분만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증액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04-15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실제 지급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요청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8 국립대학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범위

질의요지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상, 증명서 발급 건수 및 금액을 정리하는 실무업무가 "재정보증 없이는 담당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2022-07-08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 회계관계공무원 등 그 직무대리자 및 이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재정보증 설정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59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관련

질의요지

업무추진비 비목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에는 편성 지침 상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라는 기준이 있으나, 집행 지침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 시 편성 지침 상의 3만원 한도를 준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7-22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을 국립대학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편성·집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국립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60 국립대학회계 강사수당 지급 기준

질의요지

2022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중 강사수당에 대해 문의드리며, 특히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회신내용 2022-10-28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 「2022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일반강사1급의 강사수당 지급단가는 1시간 230천원, 이후 초과 강의 시 120천원(상한액 450천원)이며, 지급단가 범위 내에서 강의료 책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대면 강의의 경우에도 지급단가가 달리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1 산학협력단 운영차익 활용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의 결산 결과 발생한 운영차익을 대학의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대학 운영에 활용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운영차익(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수익 재원은 제외*)은 사용용도를 정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비회계로 전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수익의 활용 가능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름
- 한편, 동 운영차익이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된 이후에는 대학의 설립 유형(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 따른 관련 회계 법령의 적용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민원

62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서식

질의요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사립대학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서 서식을 다운받고 싶은데 서식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해당 서식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www.support.kasfo.or.kr) - 맞춤형 온라인상담 - 자료실 - 사업관련 자료'에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개정 알림' 의 첨부파일인 기본재산 관리 각종 서식에서 엑셀파일의 '사립대학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3 대학생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

질의요지

대학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에는 표준현장실습과 자율현장실습이 있는데 표준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자율현장실습은 교육을 목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나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곳에 가서 무급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이 있어서 원하는 업체로 매칭을 해 주었는데 그 업체는 1인 기업이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산재보험 가입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산재보험에 들어줄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 현장실습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현장실습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곳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습을 진행하기 이전 사전확인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인 기업이다 보니 근로계약을 해서 해당 학생이 근로자로 의제가 되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4 대학생 현장실습 정부지원금 기준

질의요지

대학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면 대학에서 정부지원금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8주 실습을 진행하여서, 실습지원비를 주 단위로 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4호에서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으로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월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 되면 정부지원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 단위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정부지원금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비 집행 기준을 반드시 검토한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65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대학 현황

질의요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는데 산업체 위탁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산업체위탁교육을 시행하는 대학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에 대한 업무는 현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을 시행하는 대학 현황은 '전문대학포털(www.procollege.kr)' 내 '평생교육정보' 에서 산업체위탁교육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6 폐교된 동부산대학교 활용

질의요지

동부산대학교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 학교가 폐교되어서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구청에도, 교육청에도 전화하여 물어봤었지만 교육부로 전화해 보라고 하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2020년 8월 7일(금)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습니다.
-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학교 폐쇄 후에도 동부산대학교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관할청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따라서 폐교된 동부산대학교 출입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학교법인의 관할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 대학 행사 시 주류 판매

질의요지

대학들이 대학교 안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축제를 할 때 주점을 열어서 주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주점에서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의 의제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축제 등 대학 내·외부 행사시 주점 등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합니다. 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9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질의하신 대학 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의 주류 판매 가능여부는 해당 편의점이나 마트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68 대학 내에서의 음주 금지 여부

질의요지

OO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 축제 시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대학 내에서의 음주가 아예 금지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대학 내에서 음주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하여 축제 현장에서 음용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주류를 대량 구매해 와서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축제현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도매(15백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소매(9백만원 이하 벌금)

69 대학교 축제 시 식품 조리·판매

질의요지

OO대학교 재학생입니다. 대학 축제 때 주점을 열어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도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은 법에 저촉되거나 하지 않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 등)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학축제와 같이 한시적인 비영리 친목도모 목적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은 아니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행위,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고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교 내 축제 행사 목적이 아닌 학교 주변 주민 관광객(불특정인)등에게 학교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학교주변 음식점 영업자 및 학부모 등의 신고로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습니다.

70 대학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요지

대학교의 안전관리자(보고관리자) 선임기준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가 맞는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기에서 50인은 교직원 전체 기준으로 50명이 아니라 청소, 경비,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50명 이상을 말합니다.

Ⅳ

평생교육·국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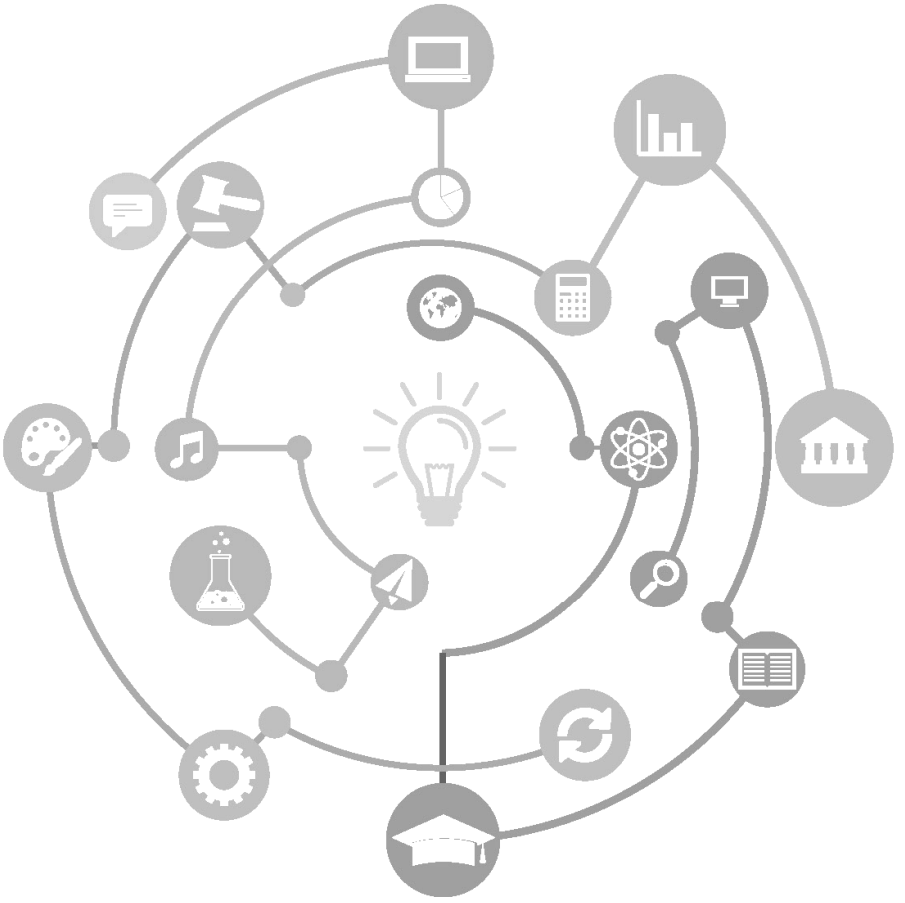

평생교육

01 평생교육기관의 방역패스 기준

질의요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학원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응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등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1-07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 제공 시, 모든 종류의 시설을 담지 못하는 관계로 유사 업종을 참고하여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부는 평생교육시설 방역 수칙을 학원 등에 준하여 적용토록 안내 중입니다.
- 현재, 일반 평생교육시설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실내 체육활동을 수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방역 수칙을 준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922 (2021.11.9.))
- 우리 부에서는 방역 수칙 변동 시, 시도청 및 교육청(지원청 포함), 전국 지자체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적용 및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귀하가 운영 중인 평생교육시설이 속한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양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인문 교양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2-03-11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 이용 대상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평생교육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은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3 평생교육원 내 대체의학 관련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내 대체 의학 관련 교과 운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거나 권고하는 내용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04-04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평생교육법」 제6조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 평생교육원 운영 시,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 실체적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의 안내를 별도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관등록번호 조회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기관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2022-04-12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부는 각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별도의 기관등록번호를 부여하거나 기관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평생교육원의 등록번호 조회 및 기관등록증 재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5 평생학습시설 수강료 환불

질의요지

1개월에 4회 수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개강일은 5월 2일이지만 첫 수업은 5월 7일에 진행됩니다. 첫 수업을 듣기 전인 5월 3일에 수강생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수강료의 2/3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이 문제가 되나요?

회신내용 2022-05-09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수업시작 전에 반환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습자가 이미 낸 학습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강일과 첫 수업일을 일치시켜, 학습자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06 평생교육원 숙박

질의요지

평생교육원 및 어학원으로 사업자 업종 등록 후 숙박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05-2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평생교육법」에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하며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7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 시 학력란 기재 관련

질의요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OO대학교 OO학과 졸업"이라고 학력란에 기재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06-14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학점인정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하였더라도,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를 취득한 것일 뿐 해당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아울러,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 단위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학과'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기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는 해당학교의 특정 '학과'를 졸업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OO대학교 OO학과 졸업'이라 볼 수 없으며, 학력란의 기재는 '학점인정법에 의한 OO학사 취득'으로 작성이 적절합니다.

08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대면수업 운영

질의요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비대면 등교 수업 운영이 불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2-02-11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우리부는 '21년 10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2021.10.29.)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출석수업 기반과정에 대하여 '22년 3월부터 대면수업을 전면 시행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21, 2021.11.17.)
- 또한, 오미크론 변이와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2022.2.8.)하였으며,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출석수업 기반 과정) 또한 '22년 3월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 대면수업 전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혼합수업, 비대면 수업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128, 2022.2.9.)에 안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09 학점은행제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행

질의요지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02-23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연말정산 시 교육비 처리와 관련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과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비학위과정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10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 취득

질의요지

기존 학사학위 취득 기간 동안에 평생교육원 · 사이버대학 · 계절학기 등으로 취득한 타 전공 관련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회신내용 2022-06-14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 수여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위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따라서 기존 학위 취득 기간 중에 취득한 학점(시간제등록, 평가인정학습과정 등)과 자격은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민원

11 방송통신대 편입학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의 경우 3학년으로의 편입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인으로부터 방송통신대학교는 2학년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4년 과정의 방송통신대학교 2학년으로의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방송통신대학의 편입학은 「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송통신대학교의 편입학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방송통신대학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사이버대학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근거 법령

질의요지

사이버대학의 수업 등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 중에서 개인인증서는 발급이 무료이고 범용공인인증서는 유료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3주차까지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하더니 4주차가 되면서부터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차단하여 대학에 물으니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는 각 서비스나 범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이버대학의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로그인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소속 대학으로 변경 등에 대한 요청을 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3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질의요지

2020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같은 해에 취득한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취득할 당시에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21년도에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이 되었는데, 이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자격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0년에 취득한 민간자격이 2021년에 국가 공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공인을 받기 이전인 2020년에 취득한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질의요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증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증에 설치자명이 기관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재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신고증 등 신고 요령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업무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 신고증 관리 역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신고요령과 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

질의요지

2019년도 및 2020년도 평생교육 참여도와 프로그램 현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202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이 있어 2021년의 평생교육 참여도와 프로그램 현황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은 없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2019년도 및 2020년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자료집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KESS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사이트의 통계간행물 카테고리의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학원강사의 성범죄경력확인서 발급

질의요지

학원 강사 등록 시 성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경력확인서는 학원이 위치한 지역의 학원들을 관할하는 경찰서에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학원 강사 등록 시 제출하는 성범죄경력조회서는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경찰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경찰서를 통해서 발급한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7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대상

질의요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을 한 곳이고,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고등학생을 교육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등학생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대상이지만, 고등학생이 직업교육이나 취업을 위하여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학습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학원의 종류에 따라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학원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 관련

질의요지

4년제 대학교의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사정이 생겨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학원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학에서 자퇴처리가 되면 학원 강사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학력에 대한 부분은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선발은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 학원강사 등록은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스터디카페 지도·감독 요청

질의요지

중학생 여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그 동안 독서실에서만 공부했던 아이가 시험기간에 친구들을 따라 스터디카페라는 곳으로 옮겼었는데 학습공간이 남녀구분이 없이 여학생 옆에 남학생이 앉을 수도 있는 제한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스터디카페는 현행법상 공간임대업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 등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학원이나 독서실 등 「학원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도·감독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대출 가능 여부

질의요지

제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학점은행제 이용자에게는 정부에서 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 23년도 내년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교육부는 지난 10월 13일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2021년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28.공포, 2022.12.29.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2023.1.4.시행)」 참고

- 2023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육

21 해외 대학교 학위 인증

질의요지

외국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위가 국내에서도 유효한 학위로 인정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05-12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 외국 학위의 국내 인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 학위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기업이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 또는 기업은 '학위 인정 주체'로서 학위를 수여한 고등교육기관의 법적 지위와 학위 소지자가 이수한 프로그램의 자격 수준 및 학습 형태 등을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입학 사정 또는 채용 등에 활용합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가 간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위한 조약*에 근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설치된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를 국가학위정보센터(N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18.2월 발효)
-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국내외 교육 제도·자격 수준·고등교육기관의 인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누리집(karic.kr)의 Q&A를 통해 외국 대학이 자국 정부의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재외한국학교장의 임기

질의요지

재외한국학교장 임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1-12-03 (글로벌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 재외한국학교장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재외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제15조제3항에서 파견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관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부가 선발하여 파견하는 재외교육기관장의 근무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라 임명되는 교장·원장의 임기와는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3 한국학교 설립 근거

질의요지

재외한국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인가요?

회신내용 2022-04-26 (글로벌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학력의 인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민원

24 대학 부설 한국 어학당 현황

질의요지

대학 부설 한국 어학당 현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사이트 → 한국어학습 → 한국에서 배우는 한국어(한국어교육원 안내)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5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학적증명서 발급

질의요지

최종학력증명서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물류대학원을 나왔는데 네덜란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남 광양에 있었던 대학원입니다. 현재는 폐교되어 학교가 없고, 2008년도에 입학할 때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해 주는 대학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 13년도에 폐교된 외국교육기관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소재지:광양)의 학위증명서 등 학적발급은 네덜란드에 있는 본교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은 더 이상 교육부 관리대상의 외국교육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6 인가받은 외국교육기관 현황

질의요지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받은 학교가 맞는지요? 또 인가받은 학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가 맞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현황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www.isi.go.kr) 사이트를 통해 학교급별(유초중등/고등(대학))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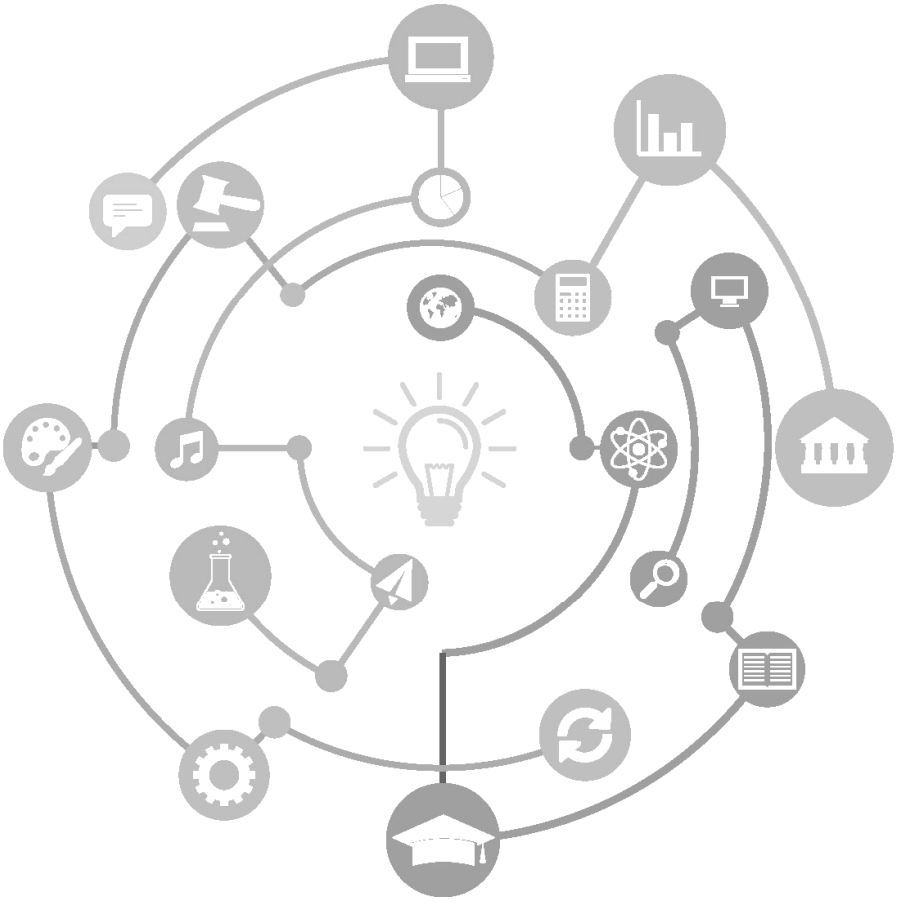

기타

01 국가공무원의 질병휴직

질의요지

국가공무원의 질병휴직 사용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2022-04-29 (운영지원과)

- 국가공무원의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의 한 종류로,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7제1항에 따라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휴직명령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 또한, 휴직기간은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됩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질병의 특성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치료)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단서 외에도 소견서 등 기타자료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공무원 인사실무 p414~415,430 참고)

02 교육부 관할 각 기관의 채용공고 확인방법

질의요지

국립대학, 사립대학, 교육청, 초·중·고등학교에서 채용하는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채용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03-08 (운영지원과)

- 국립대학의 직원 채용공고는 각 대학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립대학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에 대한 사항 또한 각 학교법인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채용공고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개별 대학의 채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해당 대학의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채용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직원 채용공고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인사/채용 관련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03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 재직기간

질의요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퇴직교원 정부포상'의 재직기간 산정에는 임용 전 군복무 경력 및 기간제 교원 경력을 교원경력으로 인정하는데, '교육부 장관표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나요?

회신내용 2022-03-08 (운영지원과)

- 공무원을 표창하는 경우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의무복무기간·휴직기간 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6p. 재직공무원 표창의 수공기간 산정 기준 참조
-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의 수공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 전 군 경력 등 일부 유사경력을 수공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교원 정부포상(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표창)뿐만 아니라 퇴직교원 대상 교육부장관 표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33p. 퇴직공무원 포상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산정방법 참조

0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우선순위

질의요지

헌법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회신내용 2022-04-27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질의해주신 사항은 교육부 소관 사항(정부조직법 제28조 제1항 참고)은 아니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발간 책자 등을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은 하위의 법규범 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중략...) 헌법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 및 부령(제95조)의 순서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이하 생략)" (법제처 2021년 12월 발행 '법령입안심사기준' 5P)

전화민원

05 교육지원청 설치 관련 법령

질의요지

제가 이사를 온 지역은 인구가 20만이 넘는데 다른 지역처럼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학생 수 또는 인구 수 대비 교육지원청을 유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법이 있습니까?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서 인구 수와 학생 수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6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요지

아이가 동일 유치원에 3년째 다니고 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3년 동안 유치원선생님이 아이를 아주 잘 돌봐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감사의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상태에서 감사 의미의 소액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안 되는 걸까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7 스승의 날 카네이션

질의요지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스승의 날 기념용으로 포장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08 국내 대학의 법인명, 개교일 확인 방법

질의요지

전국 사립대학교의 학교법인명과 혹시 개교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신내용 2022년 전화문의(교육안전정보국 교육데이터담당관)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 - 게시판 – 자료실의 ‘학교 개황 리스트(2022.10.4. 기준)’에서 학교법인명과 학교개교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 개황 리스트’에서는 학교법인명과 학교개교일 외에도 해당 대학의 소재지, 설립구분(국·공·사립), 주소, 총장명, 대표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

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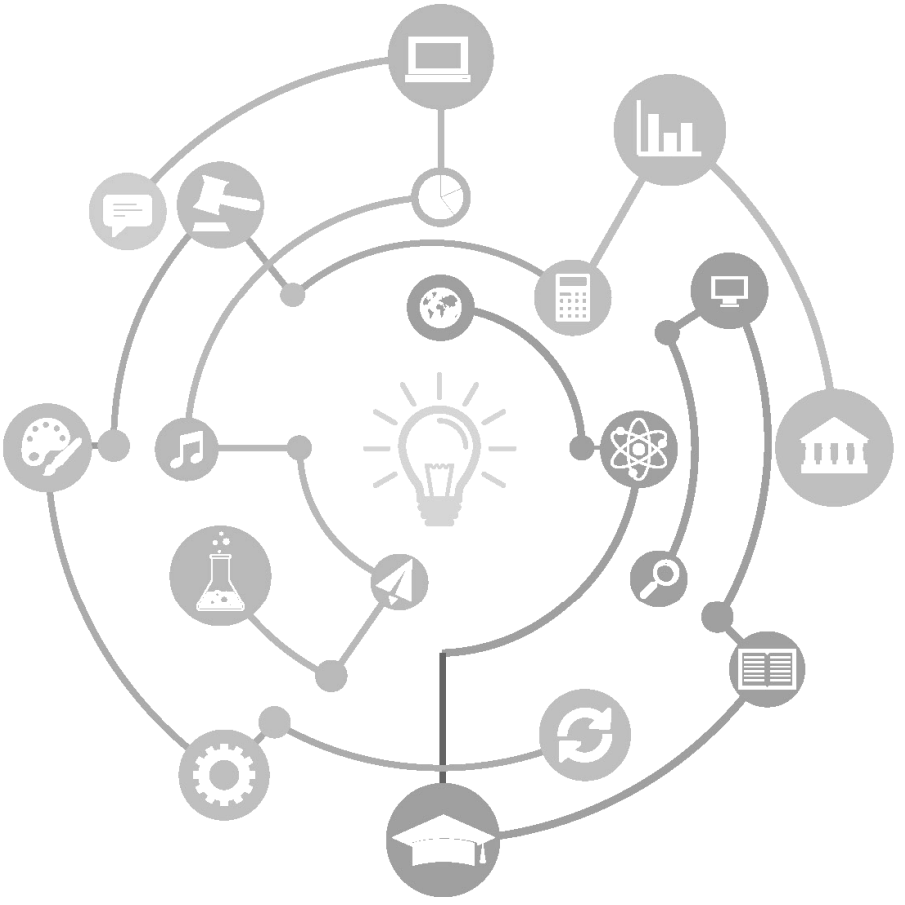

국립국제교육원

01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자격요건에 지텔프 스피킹, 텝스 스피킹 등 시험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2022-06-07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

- 최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국가에서 채용 시 인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가 다양해진 바, 민원 내용을 고려하여 더 많은 지원자들이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채용부터 민간에서 정규(정기) 시험으로 운영하고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적극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당시험은 TOEFL Speaking, TEPS, New TEPS Speaking, G-TELP, G-TELP Speaking, FLEX입니다.

0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서버 관련

질의요지

TOPIK 시험은 매번 신청할 때마다 대기자수가 많아 접속이 지연됩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서버 증설 계획은 없나요?

회신내용 2022-08-16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접수기간 중 홈페이지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시험접수를 위해 평상 시보다 수십 배 이상의 홈페이지 접속자가 일시에 몰려 들고,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열 기능을 추가한 결과, 접속 순서에 따라 홈페이지에 일찍 접속한 지원자 순으로 순차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어능력시험센터는 원활한 시험 접수를 위하여 연내 서버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 시험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버 증설 이후에는 좀 더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장 확대와 접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센터는 응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연 6회 시험 외에 연 2회 이상의 인터넷 기반 시험(IBT)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요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3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비 보조

질의요지

스리랑카에 성적이 우수한 약학 대학생이 있습니다. 정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정부장학금이 안되면 다른 학비 보조방안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2022-10-20(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 한국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 장학금으로 석사 또는 박사과정 공부가 가능합니다. GKS 장학생으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 자격 요건은 국적, 연령, 학력 성적, 건강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2 GKS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GKS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은 2023년 2월 초 경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의 GKS Notice 게시판에 탑재될 예정이며, 수학대학 정보 등 지원에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 이외 대표적인 정부지원 프로젝트는 교육부 BK21사업이며, 교육부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장학생은 월 70만원(석사) 또는 130만원(박사)의 연구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연구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어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학생 선발은 대학원에서 결정합니다. 대학원별로 선발기준과 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대학원과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04 교원소청심사 청구서 및 기타 서류 작성·제출 방법

질의요지

교원소청 신청서 작성요령과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 제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1-11-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 교원소청심사청구서 양식은 위원회 누리집(www.ace.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후 [소청심사안내]-[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사유 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사본 1부와 기타 관련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청구서 및 관련서류는 위원회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소청 접수]-[온라인 청구로 이동하기] 선택 후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은 청구서 및 관련서류 2부(원본, 부본)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편소인에 찍힌 날짜와 상관없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로 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팩스 제출은 044-868-8125로 서류 송부 후 044-203-7402로 전화하셔서 도달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는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아보신 후 추가로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05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방법

질의요지

교원소청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2021-11-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 집행정지 신청서는 위원회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위원회 누리집(www.ace.go.kr) 접속 후 [온라인 소청 접수]-[온라인 청구로 이동하기] 선택 후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소청심사청구서를 먼저 접수한 후, [소청 청구]-[소청 청구관련신청]으로 이동하여 [집행정지(교원소청)]을 눌러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들은 붙임으로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제출은 집행정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 2부(원본, 부본)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로 송부하여야 하고, 팩스 제출은 044-868-8125로 서류 송부 후 044-203-7402로 전화하셔서 도달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06 교원소청심사 결정서 재교부 문의

질의요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되었던 징계 취소 결정문을 다시 발급받고 싶은데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내용 2022-06-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 교원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 위원회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분실 등 사유로 결정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누리집(www.ace.go.kr)에 접속하여 [자료실]-[관련서식]에서 결정서 재교부 신청서(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결정서는 사건 당사자에게만 교부되므로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경우 결정서 재교부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서 재교부 신청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로 우편 송부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07 삼국사기 판본 관련

질의요지

현존하는 삼국사기 판본은 몇 개이며,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2-10-21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 삼국사기는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1145년(인종 23)에 완성한 책입니다. 그러나 당시 판본은 전하지 않고, 후대에 간행된 몇 개의 판본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옥산서원본(국보 제322-1호), 정덕본(국보 제322-2호), 성암본(보물 제722호), 계명대학교도서관본(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9호)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밖에 일본에도 몇몇 판본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체적인 면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현존하는 삼국사기 판본의 전체 숫자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현존하는 삼국사기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은 성암본입니다. 성암본은 고려후기인 13세기 후반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암본은 삼국사기 권44부터 권50까지 총 7권 1책만이 남아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덕본과 옥산서원본은 총 50권 9책의 완질본입니다. 정덕본은 1512년(중종 7)에 판각되었으며, 옥산서원본은 1512년(중종 7)에 개각한 목판을 가지고 1573년(선조 6)에 다시 찍은 것입니다. 계명대학교도서관본은 1711년(숙종 37)에 동활자로 간행한 것입니다.
- 삼국사기 판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 해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 한반도 벼농사의 시작 시점

질의요지

한반도 벼농사의 시작은 신석기시대 말기로 보아야 하나요, 청동기시대로 보아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2-06-28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 학계에서 우리나라의 벼농사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청동기시대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1980~90년대 이후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첨부해 보내주신 자료에 보이는 일산의 가와지볍씨 발굴은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의 하나입니다.
- 그러나 이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출토된 볍씨의 연대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는 구체적인 벼재배와 관련된 농업생산방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지 볍씨가 출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기를 당기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석기시대 말기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제기되었지만, 그 실제 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단계에서 한반도의 벼농사 시작을 신석기시대 말기부터라고 단언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는 청동기시대라는 학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더불어 신석기시대 말기로 보는 견해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9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사초의 문자 및 어순

질의요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사초는 한자로 쓰였나요 한글로 쓰였나요? 한자로 쓰였다면 어순은 어떻게 되었나요?

회신내용 2022-06-28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 사초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편찬 시 거두어 들였다가 편찬이 완료되면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남아서 전해질 수 없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정태제사초'나 '이담명 승정원사초' 등 남아서 전해지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 사초들은 한글 창제 이후 작성된 것인데 모두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 조선왕조에서 한글 창제 이후에도 양반관료들은 한문을 사용하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공식문서는 한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문관(춘추관)이나 승정원에 속한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양반관료에 의해 작성된 국가의 공식문서로서,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자(한문)로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 서면언어인 한문은 오늘날의 중국어와는 문법이나 어휘가 상당히 다릅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문을 고대중국어, 오늘날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는 현대중국어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사초에 사용된 한문은 고대중국어입니다. 사초를 작성한 사관은 한자나 한문에 능한 지식층 관료였습니다. 따라서 한문으로 기록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10 조선시대 수군통제사 품계

질의요지

조선시대 수군통제사의 품계가 정2품 또는 종2품으로 달리 설명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가요?

회신내용 2022-07-12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 수군통제사의 정식 명칭은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임진왜란 중인 선조 26년(1593년) 경상·전라·충청 3도의 수군을 통괄하여 지휘할 필요성에서 설치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군통제사에 최초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였던 이순신입니다.
- 수군통제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식 관제에 편제되면서 임기 2년의 '종2품' 외관직 무관으로 상설화되었습니다. 수군통제사가 종2품 관직이었음은 ≪대전통편≫ 등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조선시대 법령자료 〉 대전통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료에서 수군통제사를 종2품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2품이라고 한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군통제사는 병조판서의 관할 아래에 있었는데, 병조판서는 정2품이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11 북한 공군 이웅평의 귀순 이유

질의요지

북한 공군 이웅평의 귀순 이유가 라면 봉지에 적힌 글 때문이라는 기사가 맞는지요?

회신내용 2022-09-06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 1983년 2월 25일 북한 공군장교 이웅평의 귀순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서, 당시 주요 일간신문이나 언론매체에서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1983년 4월 13일부터 같은 해 6월 18일까지 총 46회에 걸쳐 이웅평(리웅평)의 북한탈출수기 "단숨에 왔디오"를 연재한 바 있어서, 그의 귀순 이유 등을 짐작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탈출수기 제41화 '한국서 날아온 라면봉지'(동아일보 1983년 6월 13일자)에 따르면, 이웅평은 1978년 8월초 한 해수욕장에서 한국의 라면봉지를 보고 남한의 실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그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순할 것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그러나 그의 탈출수기에 따르면, 그는 이후 4년여 동안 1979년 사상범 탈주사건, 1980년 김일성과의 만남, 1982년 여배우의 총살사건 등을 경험하며 북한의 통치체제에 대해 더욱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출을 결심하여 1982년 2월 남한에 귀순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한국의 라면봉지가 이웅평이 남한으로 귀순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이유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12 우리역사넷 역대국사교과서 개선 요청

질의요지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역대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일제강점기 교과서의 내용은 오해 또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회신내용 2022-05-19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 우리역사넷의 역대국사교과서에 수록된 각 교과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에 따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고, 현재 학계의 견해와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DB로 구축한 것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료' 차원의 목적이 큽니다.
- 그러나 일부 교과서의 내용이 일반 이용자들의 오해와 악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관련하여 우리역사넷 사업팀에서는 대처 방안 수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대국사교과서의 시대별 구분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수정하고, 시대별 교과서의 특징 및 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당장 실현에 옮기기는 쉽지 않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후 사이트 개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바일 사이트 이용 방법 개선

질의요지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모바일 사이트를 통한 원서접수 기능 추가 등 이용 방법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2-03-15(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

-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원서접수 및 취소 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PC버전보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에서 PC버전의 모든 기능이 함께 구현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2022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바일 접수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안하신 'PC버전보기' 기능 구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시스템 개선

질의요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팝업창 등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2-03-15(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화면에서 응시자의 시험장 선택 편의 제공, 접수 제한 시간 운영 등의 목적으로 팝업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자의 접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에 팝업차단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느끼시는 불편에 대해 저희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중입니다.
- 현재 개발 중인 모바일 고도화 사업 서비스와의 연계 작업을 통해 팝업창을 통하지 않고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Memo

Memo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총괄	반부패청렴담당관	정 원 숙
기획 및 편집	사무관	김 운 후
	주무관	김 세 진
	주무관	김 현 진
	주무관	김 형 준

인쇄일 : 2022년 12월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우 30119)

인쇄처 : 주현기획 (Tel. 044-864-2020)

본 사례집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 → 민원 → 질의회신사례집)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044-203-609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